제316회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7월1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6.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5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68.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6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0.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73.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7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5.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7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2. 海洋科學調査法 일부개정법률안
9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9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5.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된 안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8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8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황영철·최봉홍·안덕수·권성동·노철래·김도읍·박인숙·문정림·박창식·정갑윤·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 8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계속) ····· 28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
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28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28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
1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백재현·배기운·전순옥·우윤근·강기정·김동철·유성엽·안민석·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28
1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계속) ····· 28
1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양승조·남인순·김용익·김성주·이언주·최동익·김미희·이목희·이학영·전순옥·김승남 의원 발의)(계속) ····· 28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金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 28
1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金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 28
1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金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 28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金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 29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金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 29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金永柱·이자스민·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 29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金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 29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29
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김명연·유재중·류지영·김정록·신경림·김재경·여상규·이진복·민현주 의원 발의)(계속) ····· 29
22.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李宰榮·유재중·김성찬·유승우·윤명희·박인숙·안홍준·조현룡·권성동·이재균·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29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이명수·윤진식·양승조·노영민·박수현·김태흠·정우택·이인제·이장우·홍문표·송광호 의원 발의)(계속) ····· 29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강기정·김기식·김영환·김현미·노회찬·박수현·배기운·서영교·심상정·유기홍·윤관석·은수미·이상직·이종걸·전병헌·전정희 의원 발의) ····· 32
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종범 의원 대표발의)(안종범·강은희·김을동·김현숙·강석훈·홍지만·홍일표·경대수·한기호·박대출·정갑윤·안홍준 의원 발의) ····· 32
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32
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32
53.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32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32
55.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2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황영철·최봉홍·안덕수·권성동·노철래·김도읍·박인숙·문정림·박창식·정갑윤·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 36
56.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김영록·정희수·김을동·김춘진·

김한표・송영근・김장실・김태흠・유승우・원유철・서상기 의원 발의) ····· 37
5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강은희・정희수・김을동・이자스민・김한표・류지영・이만우・김춘진・한기호・고희선 의원 발의) ····· 37
58.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영록・우원식・이종걸・김우남・강기정・강동원・이미경・이학영・김광진・양승조 의원 발의) ····· 37
59.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황영철・배재정・최민희・홍종학・정희수・최재성・김영록・유성엽・김성곤 의원 발의) ····· 37
6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추미애・황주홍・김승남・김성곤・유성엽・주승용・정성호・양승조・강기정 의원 발의) ····· 37
6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황영철・강기윤・안홍준・홍문표・김상훈・정갑윤・여상규・박성호・유승우・이자스민 의원 발의) ····· 37
6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우윤근・이윤석・김춘진・박수현・이원욱・노영민・전병헌・임내현・이찬열 의원 발의) ····· 37
6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신학용・배기운・김성곤・전정희・최원식・정청래・이용섭・장병완・홍종학・박민수 의원 발의) ····· 37
6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승남・김우남・김윤덕・김춘진・박수현・박주선・배기운・신장용・우윤근・유성엽・윤명희・이낙연・이종걸 의원 발의) ····· 37
6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황영철・송영근・최봉홍・신성범・김영록・경대수・이자스민・김춘진・김종태・김희정 의원 발의) ····· 38
6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노철래・김춘진・김우남・김태환・유성엽・윤명희・강석호・정문헌・정희수・하태경・김선동・김윤덕・김재원・박인숙・최규성 의원 발의) ····· 38
6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영환・김승남・김춘진・배기운・신장용・이종걸・최규성・추미애・황주홍・홍문표 의원 발의) ····· 39
68.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세연・김영록・전병헌・홍문표・유성엽・김성곤・황주홍・김재원・김춘진・김재윤・윤명희・백재현 의원 발의) ····· 39
6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기선・김진태・송영근・신성범・유승우・윤상현・김을동・윤재옥・김태원 의원 발의) ····· 39
70.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이이재・유승우・김재원・김영록・권성동・김우남・홍문종・이명수・한기호・김형태・홍문표・조원진・남경필 의원 발의) ····· 39
71.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이명수・이한성・정희수・함진규・김태흠・박상은・조현룡・이윤석・이종진・이헌승・안효대・이재균 의원 발의) ····· 39
7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정희수・홍문표・김우남・이자스민・민병주・강은희・김영록・김을동・고희선 의원 발의) ····· 39
73.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박상은・문병호・이이재・이종진・이노근・조현룡・이헌승・안효대・김태흠・강석호・이명수・이재균・심재철・최봉홍 의원 발의) ····· 39
7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민식・민현주・권은희・이우현・김세연・이운룡・박원석・김을동・조명철 의원 발의) ····· 39
75.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민식・민현주・권은희・이우현・김세연・이운룡・박원석・김을동・조명철 의원 발의) ····· 39
7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민식・민현주・권은희・이우현・김세연・이운룡・박원석・김을동・조명철 의원 발의) ····· 39
7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박주선・이상민・안민석・김

우남・정세균・윤관석・유성엽・김관영・문정림 의원 발의) ····· 40
7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최재성・노철래・김회선・김도읍・권성동・이춘석・김춘진・박범계・한기호・유기준・유승우・경대수・류지영・조명철・김성태・황영철・이학재・문정림 의원 발의) ····· 40
79.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신성범・이만우・홍문표・황영철・고희선・이완영・정희수・김을동・김성곤・민홍철 의원 발의) ····· 40
8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배기운・정성호・최민희・안민석・김재윤・홍종학・이낙연・김세연・유승우 의원 발의) ····· 40
8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1
8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2
83.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2
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2
8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2
8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2
8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2
88.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2
8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2
9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91.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92. 海洋科學調査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9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성・김성곤・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정세균・김민기 의원 발의)(계속) ····· 46
1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낙연・임수경・배기운・유대운・조정식・최규성・박남춘・김상훈・김세연・남인순・최원식・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 47
1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7
10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문정림・유성엽・김동완・강동원・최재성・이용섭・김성곤・황주홍・이상민 의원 발의) ····· 57
10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57
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57
11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57
11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57
1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백재현・배기운・전순옥・우윤근・강기정・김동철・유성엽・안민석・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62
2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윤・박인숙・이상일・조현룡・李宰榮・문정림 의원 발의) ····· 62
3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박민식・김재경・안덕수・박대동・김종훈・조원진・성완종・김용태・신동우・이한성・신성범・이학재・이종훈・송광호・나성린・정의화・최경환 의원 발의) ····· 62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이종걸・유승희・전병헌・김재윤・정호준・이미경・신학용・정청래・진선미・부좌현・홍의락・임수경・윤관석・조정식・최민희 의원 발의) ····· 62
3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2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 62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2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2
3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2
3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정성호·우원식·김현미·김동철·김기식·홍종학·전해철·박주선·노웅래·박남춘·신경민·남인순 의원 발의) ····· 65
3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65
3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853) ····· 65
4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5
4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5
4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5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5
4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5
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5
4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5
4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55.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1
10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유성엽·윤관석·인재근·홍종학·배기운·우원식·이인영·정성호·김제남 의원 발의) ····· 72
10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장병완·노웅래·최민희·배재정·신경민·윤관석·김윤덕·강동원·이미경 의원 발의) ····· 72
1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72
10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72
105.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72
2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함진규·박범계·강은희·권성동·권은희·金永柱·박민식·여상규·이진복·이철우·홍일표·김관영·김성곤·서영교·원혜영·조정식·황주홍 의원 발의) ····· 74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74
26.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74
27.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74
2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74
9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76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76
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76
9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심재권·원혜영·추미애·김성곤·박주선·홍익표·임수경·조명철·한정애·유승희·이인영·이목희·문병호·전순옥·윤관석·박혜자·김민기·최동익·김광진·서영교·배기운·이학영·전정희·노영민·최규성·부좌현·유은혜·유기홍·유대운·우원식·김경협·김미희·오병윤·우윤근 의원 발의) ····· 79
9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성곤·정청래·이학영·문병호·배기운·전순옥·윤관석·윤후덕·부좌현·박주선 의원 발의) ····· 79
9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박병석·인재근·김성곤·배기운·이석현·홍익표·유성엽·안민석·박혜자 의원 발의) ····· 80
10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80
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 83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 83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83
11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이우현・김기현・이상일・이재영・김을동・권은희・김태원・김한표・남경필・한선교・문대성・김희정 의원 발의) ····· 84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한 후에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관해서 법사위의 진행방식과 관련된 운영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초기에 협조하는 뜻에서 여당에서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제가 상황과 관련해서 상정 요건이 안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죽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협조와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 6월 말까지 검찰개혁 법안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그러한 그것이 있을 때 저희가 성실히 그것을 좀 더 적극 협조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월 30일도 지났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저희 야당과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7월 1일부터는 법사위의 원칙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도대체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정리돼서 저한테 전달된 적도 없고, 또 제가 그것을 파악해 보면 사람마다 다 말이 달라서 현재 원내대표 간에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 요건이 안 되는 법들, 예를 들면 상정 요건이 안 되는 법들은 법사위의 원칙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또 법사위원님들께서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시는 법들 이런 법들은 그 반대의 논리나 원리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법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출석과 관련해서는 출석을 안 하시는 부처—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차관이 대신 출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안 상정을 지금까지는 다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그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고요. 장관님께서 성실히 오시는 부서를 우선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여야 간사 간에 법사위 진행과 관련해서 시간제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먼저 법안심의 할 때 법안심의와 관련된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3분씩, 그리고 먼저 법안심의와 관련된 질의를 한 후에 현안 질의가 있을 경우에 현안 질의 시간을 제가 따로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 만약에 현안 질의면 현안 질의인 경우에는 뒤로 약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질의도 시간제한을 하겠습니다. 현안 질의는 5분으로 시간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황영철・최봉홍・안덕수・권성동・노철래・김도읍・박인숙・문정림・박창식・정갑윤・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10시45분)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신 권성동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권성동 위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12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계속 심사하기로 한 사항 외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된 사항들을 모아 별도로 위원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하여 보호받도록 하고, 둘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의 승계 행사를 인정하여 서민 금융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셋째 확정일자 부여 절차 등을 법에 규정하고 확정일자 부여일·차임 등의 정보제공 요청권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임대차제도를 구축하였으며, 넷째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하여 제한하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8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계속 심사하기로 한 사항 외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된 사항들을 모아 별도로 위원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이 법상의 보증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인정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둘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의 승계 행사를 인정하여 서민 금융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셋째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중 '건물의 철거·재건축을 위한 경우'를 1. 공사계획의 사전 고지 2. 건물의 노후·안전 3.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넷째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하여 제한하도록 수정·보완하였으며, 다섯째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의 상한을 임대건물 가액의 2분의 1로 상향 조정하여 임차인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의견을 토대로 심사한 결과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임명 절차를 명시하고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는 판사 정원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며, 둘째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 과반수 위원을 법관이 아닌 자로 위촉하도록 하며, 셋째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 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님!

3분으로 해 주세요.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1소위에서 다시 의결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안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반대했던 논거가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이 보완이 되기 힘든 성질의 것들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잘하면 되지 지금 무슨 연구기능을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기존의 사법연수원·법원행정처의 기능과 중복이 된다, 더욱이나 민사·상사·형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의 법제연구원 또 형사정책연구원과도 상당히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해서 다시 올라온 것은 그중의 일부, 인력 운용의 문제 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회 보고 의무 등 이런 것들만 의문이 해소됐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추가로 한두 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탁출연기금 같은 것이 상당히 고액입니다. 지금 거의 300억을 넘게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것도 지금 상당한 예산상의 특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연구 기능을 더하겠다는 것이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마지막 이유는 며칠 전 이정렬 판사 사퇴의 건에서 보았듯이 법원 판사들의 적절치 못한 언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이제 사법부가 좀 달라지기를 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를 원하지 이렇게 조용하게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재판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데 연구 기능을 확충하겠다 하는 것에는 국민적인 여론 조성에도 상당히,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보고 저는 절대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님의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표명해 주십시오.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권성동 위원입니다.

제가 1소위원장으로서 김진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태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타당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1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우선 사법정책연구원의 신설로 판사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원래는 정원 외로 별도로 운영하게 돼 있었는데 인원 증원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이 좀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시설도 기존의 사법연수원 건물을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원이 있고 과거 법무부 산하에 형사정책연구원이 있었듯이 모든 헌법기관에 연구원이 있는데 대법원만, 사법부만 없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해서 이 연구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우리 소위원들 만장일치로 이렇게 통과된 만큼, 김진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고 법원이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또 좀 더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마는 이번에 한해서 여러 다수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를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또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교 위원 다른 법안에 대해서……

○위원장 박영선 일단 3항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현안 질의……

○위원장 박영선 일단 3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김진태 위원 3항에 관련된……

○위원장 박영선 현안 질의는 좀 뒤에 하시고요.

○김진태 위원 그러면 3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현안 질의로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정렬 건입니다, 이정렬 판사 건.

제가 정말 작년부터 국정감사, 업무보고, 인사청문회 등 자리에 가는 데마다 나왔습니다, 단골손님. 정말 문제 많다, 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조차도 우려된다, 그때마다 법원행정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더 확인해 보겠다, 사안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지금 무슨 사태가 터졌습니까? 예? 이웃하고 말썽을 부리다가, 행패 부려서 지금 형사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지금 법원이 이렇게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다른 위원들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3항 법원조직법에 대해서 조금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과 2항은 통과를 시키고 3항은 조금……

○전해철 위원 아니요, 통과하기 전에 1항, 2항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1, 2항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안은 우리 소위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그런데 소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전체 상임위에서 간단히 공유하고 또 문제를 확실히 제기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 안 되고 또 전월세 상한제 역시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계약갱신, 소위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차선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항, 2항에 대해서는 지금 1소위에 계속 중에 있으니까 적어도 최단 기간에 다시 한번 논의할 때는 애초에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논의되고 실질적인, 가시적인 결과가 앞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전해철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의사일정 제1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미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추후에 적극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2항은 적용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미반영이 돼서 불충분하다, 그러나 지금 합의한 부분만 통과시켰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셔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어려움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잠깐 여쭤 보겠는데요, 보증금이 많은 상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증금을 많이 내고 상가를 임대한 사람인 경우에 부자여서 그 사람들에게는 계약갱신권이라든지 대항력이라든지 아니면 인상률 상한제 이런 부분에서 배제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월세가 4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환산보증금은 얼마일까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쉽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영교 위원 4억 5000이더라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월세를 600만 원 냈다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6억 5000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었냐면 환산보증금이 많으면 대개 부자라서 우리는 소액의 적은 임차인들을 보호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상가 건물주들이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많이 받는 것이에요. 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이 받아서 나갈 수 있지만 월세는 한 푼도 못 받아 나가는 건데 이것이 환산보증금으로 돼서 이 사람들은 대항력, 인상률 상한제 뭐든지에 해당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월세를 많이 내는 곳은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들어가고 실제로 권리금을 엄청나게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금방 쫓아내면 쫓겨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방 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실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불행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항력과 임대료 상한율 인상 제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이번에는 그게 통과되지 않았는데 다음 1소위에 남아 있으니 그 부분을 마저 더 논의해서 보호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김진태 위원께서 아까 법원조직법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법원이 새로운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수십 명의 연구원이 생기는 줄 알았고 새로운 건물이 생기는 줄 알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연구기관이 없는 곳이 법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동안 법원이 폐쇄적이지 않았나, 거기 보면 법원연구기관 안에 외부에서 사람들을 초빙해 가지고 연구를 하게 합니다. 좀 더 법원이 열려야 합니다.

굳이 고용한다면 5명 정도, 있는 기관은 사법연수원 건물을 이용하고,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해서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원이 오히려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1소위에서 많이 논의했었고 같이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오늘 통과시키고, 그리고 김진태 위원님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 소수의견으로 달고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선 법안과 관련된 질의만 우선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현안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아, 질의하신다고요?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지금 법원조직법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의 설명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서영교 위원께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조직을 무조건 확대시키는 것도 문제이고 증원, 예산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만 저도 그 설명을 듣고 법안을 보면 그러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정렬 판사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도록 더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적 장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김진태 위원께서 한번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금 찬성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김진태 위원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일단 새누리당 간사께서 조금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냥 전체회의에 잠깐 계류했다가 오후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1항과 2항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의 법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법무부 소관, 주무 부처가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몇 년째 국토교통부의 반대 때문에 통과가 못 되고 있는데요, 제가 국토교통부 반대 논리 자료의 근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90년대 자료입니다. 그 90년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와서 이것이 무슨 전월세 값이 폭등하니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토교통부장관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절절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1항과 2항의 법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만 이것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납득이 좀 안 가고, 특히 이 법을 통과 즉시 발효하는 것으로 하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와 관련해서 법무부 법무실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마 상한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선 상한제는요, 이미 시행령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한 번 더 계약하는데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부처 간에 협의도 거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동안 법무부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이 법에 대해서 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대 국회 때 이것이 이미 다 합의가 됐었습니다, 통과시키기로. 그랬는데 그때 이런저런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반대를 또 해서 못 했는데요. 이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드립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이번 상정된 법안은 저희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던 법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더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것은 법무부가 만든 법은 아니고요, 대표발의자가 접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위원장 박영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선진국에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증금 채권자들을 위한 이런 제안들을 통해서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대차를 해 준다든지 이런 법안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입법했다는 말씀이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자,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오후에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질의하실 분 전해철 위원님 그다음에 이춘석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이렇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현안 질의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야당 법사위원 전체가 기자회견 했는데 혹시 보고받은 사실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야당의 법사위원 전체가 적어도 법무부장관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을 기자회견 했다면, 물론 보고를 누락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위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 날 1소위 때 상설특검 관련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얘기 들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이유가 뭐라고 그럽디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야 간에 이견이 많았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것만 들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법무부 차관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한 건데요.

그날의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첫째는 대선 때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서 왜 사실상 마지막인, 6월 국회 마지막인 1소위 때조차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물론 그날 김도읍 위원님이 냈던 안이 발의됐다고 했지만 3~4개월 간 원내대표단에서 수차례 약속했던 검찰개혁안이 실질적인 논의도 못 하게 이렇게 6월 국회가 끝나냐, 6월 국회 때 끝내기로 수차례 여야 대표가 합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못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이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데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하고 협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당당한 모습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조차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제 야당 법사위원 전체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개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위중하게 규탄하고 정말 통한의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나 몰라라' 그러고 방관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문제는 여야가 정치력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했고 또 법무부에서 업무보고 때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 실시하겠다 했다면 적어도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 그 적극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진전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이걸 정치권에 맡겨 두고 소극적으로 있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장관 생각은?

○법무부장관 황교안 정치권에만 맡겨 두고 소극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자, 6월 중으로 이렇게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상에 좀 차질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안 내면 지금 새누리당이 여당이라 하더라도 6월…… 적어도 정부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발의하거나 진보정의당에서 발의했던 법안은 이미 있는데 정부안이 나왔다 그러면 원칙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그 과정에 관해서는

정부안을 먼저 내 달라고 하는 의견도 계셨고 또 여당안으로 내 달라는 의견도 계셨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다소간에 이 야기를 오가면서 시간이 좀 지연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 지금 여당안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낸 안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일부 협의도 됐고 협의 중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이미 발의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정부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협의……

○전해철 위원 아니, 정확히 말하세요, 그냥.

○법무부장관 황교안 정부안하고,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요, 상당 부분 유사하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좀 더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그게 여당의, 물론 여당하고 협의하는 것도 좋지만 야당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야기를 하고 정부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그걸 지났다는 것이지요. 6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런 안이 안 나와서 안 됐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장관께 한 차례 이미 이야기를 드린 것 같지만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012년 11월 12일 날 이야기한 공약 정치쇄신안에 보면, 11월 12일 날 '현행처럼 사안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검사를 정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맞는 정부안대로 하기를 제가 정말로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공약을 지키고 또 여야 간에 합의가 최대한 수용이 되는, 논의가 되는 이런 좋은 법안을 만들도록 더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가지만 최대한 빨리 이번 주라도, 임시회 끝나기 전이라도 정부안을 야당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야당께 설명드릴 그럴 시기가 됐는지 그런 준비가 됐는지 검토를 해 보고 가급적이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전해철 위원님이 상당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대표끼리 6월 달에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에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제1소위가 있었는데 그때 전향적으로 1소위 위원장님께서, 권성동 간사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법안을 제출해서 사실 여야가 공히 이제 법안을 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저는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소위를 진행할 때, 법무부에 계신 분들이 정말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두환 추징법 같은 경우에 여야가 굉장히 간극이 크고 대치가 많이 됐는데 합리적인 선에서 법무부에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안을 만들어 왔어요, 여야가 딱 수용하기 좋게.

그다음에 오늘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어떤 봉착 상태에 있을 때 법무부가 안을, 합의된 부분을 만들어 보라 하니까 금방 만들어서 하여튼 법이 통과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여야가 공히 이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여야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어떤 입장이라는 것을 정확히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야 다음부터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저희 야당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여당이 마음

대로 하는 거 아니고 사실은 그 개혁의 객체에 해당되는 법무부라든가 검찰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입장을 내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법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면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생각하는 야당 안에 대한 입장, 여당 안의 입장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저희 법무부에서는 인수위나 이런 쪽하고 죽 협의 과정을 통해서 상반기에 충분한 실태조사와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절차들을 거쳐서 가급적 빨리 그것을 금년 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던 중에 정치권에서 6월까지 합의를 하겠다 이래서 저희도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도 서둘러서 진행을 했었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바로 일주일이다 3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지금까지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을 먼저 낸다는 것이 어렵던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장관께서도 계속해서 검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일정 시점 안에 법무부에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선 법무부장관님, 이 이슈는 지난 4월 달부터 이슈가 됐던 것이고 지금까지 법무부가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 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지금 7월 1일입니다,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7월 4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가지 검토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날짜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검토를 몇 달 동안 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간단한 문제가……

○위원장 박영선 더군다나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관님,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같은 이야기를 죽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생각해 왔는데 지금 여야 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딱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날짜를 얘기하십시오. 국민 앞에 선거가 있으면 아무 얘기나 다 하고 선거 끝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11월 며칠이라고 아까 전해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날 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관한 대통령의 담화문이 있습니다. 그 담화문대로 법 만들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통령님의 공약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죽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7월 4일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날짜 얘기 안 하면 올해 연말에나 내실 생각이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지 않습니다.

게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조정된 안을 보고를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니까 며칠까지 가능하신지 답변하시고 가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 날짜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진행을 못 합니다.

○권성동 위원 이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원장 박영선 아니, 왜냐하면 장관님께서 그동안에 몇 번 제가 기회를 많이,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 그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뭘 그래요.

빨리 진행합시다.

○노철래 위원 아니, 딱 4일이라고 못 박지 말고……

○권성동 위원 7월 4일이면 내일모레……

○위원장 박영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6월 말까지는 늦어도 내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 정도로 양해를 구해 드렸으면 어느 정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것을 갖다가 날짜를 말씀 못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뒤꽁무니를 빼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위배한 것도 아니고 또 뒤꽁무니를 뺀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적어도……

○위원장 박영선 그 최대한 빨리는요,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최대한 빨리였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야당 위원들 앞에서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6월 말까지 하겠다고.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통령님께서 6월 말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더 빨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애쓰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래요, 융통성 있게……

○위원장 박영선 아니, 융통성은 제가 그동안에 충분히 다 발휘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다 협조해 드렸어요, 모든 것을.

○노철래 위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무슨 위원장하고 장관하고 기 싸움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서 모양이 안 좋으니까……

○위원장 박영선 아니, 약속을 지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권성동 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시고 넘어갑시다, 빨리.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6월 말까지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가급적 빨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

○노철래 위원 그래, 가능한 한 빨리하겠다고 하니까.

○위원장 박영선 그 '가능한 빨리'가, '가능한'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에서의 가능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비상식적인 장기간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 기간이 얼마를 얘기하는 건가요? 국민 앞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시니, 참.

○위원장 박영선 똑같은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중에 횡행한 소문이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설특검법과 관련해서.

○박범계 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어떤 소문입니까? 다 소문이고 제보이고, 제보이고.

○박범계 위원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간사님.

○권성동 위원 계속 발언하셨잖아요.

○박범계 위원 2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번에 여당이 할 차례인데요, 김진태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김진태 위원님이 아마 다른 것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권성동 위원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논의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할 건데, 제가 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우선 사법개혁특위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관한 청문회랄까 공청회도 실시가 됐고, 그래서 그 특위활동 결과를 어느 정도 존중하고 그것도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법안 심사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법안이라는 것 자체도, 민주당이 낸 것도 사실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간사인 제가 동의해서 법사위 전

체위에 상정이 됐고 1소위에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6월 말로 못을 박아 놓고 무조건 처리를 하자, 그런데 처리를 하는데 내용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당의 주장을 다 반영해서 이것을 처리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우리 김도읍 위원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상설특검법안을 냈으니까 이제 여당과 야당이 법안을 하나씩 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특위 존속 기간이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서영교 특위 간사도 계십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특위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과 또 양당 위원님이 제출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 심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하는데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의 뜻이 관철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막 회의석상에서……

○위원장 박영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그동안에……

○권성동 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 시간입니다.

○서영교 위원 현안 질의를 하지요, 현안 질의.

○위원장 박영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라고.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시지 마세요.

○권성동 위원 그래서 뒤에 장관님도 많이 와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쉽게 한번 얘기 좀 해 보지요. 지금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용이 어려워서 지금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에 대해서 법무부안 정부안이 못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속내를 드러내기 싫어서 저는 못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두 가지 쟁점이에요, 지금. 일단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반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또 내용이 문제지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시잖아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조금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다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감찰관제에서 특별감찰관이 계좌추적권과 통신내역조회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결론을 못 냈다 이런 말씀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각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의 김도읍 의원안을 보면 그것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계좌추적권과 통신내역조회권을 만약 인정 안 하면 그것은 바지저고리 특별감찰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빨리 결론 내시기를 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상설특검 결국은 매 건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기구특검을 지금 선호하시는 거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법무부장관 황교안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기구특검이나 제도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획일적인 용어를 정리하는 것인데……

○박범계 위원 용어 말고, 그러면 매 건마다 문제가 났을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을 선호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것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역시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저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용기를 갖고 결단을 내서 빨리 정부안을 내십시오. 빨리 내시고, 그래야지 이것이 꼼수로 비쳐지지 않습니다.

위원장께서 저렇게 하시는 이유는, 참 저희들도 피곤합니다. 법사위에서 언제까지 법무부의 의중을 알기를 무려 몇 개월을 탐색을 해야 됩니까? 그쯤에서 빨리 결단을 내시고, 정부안 내고 김도읍 의원님 대표발의한 안 나와 있고 또 제가 대표발의한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야가 절충을 하고 정부도 입장을 좀 반영을 하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

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렇게 정말 중요한 문제를 대선 전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정권이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것이 뭐가 있나요? 영유아보육법도 그렇고 검찰개혁법도 그렇고. 한번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다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태 위원 법무부장관님, 최근에 신동아의 허 모 기자가 민주당 전문위원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알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김진태 위원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 법사위에서 나왔던 권영세 녹음파일이 어떻게 누출됐냐에 관련된 건이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것입니다.

○김진태 위원 이것이 검찰청 어디에 접수가 됐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경찰청이에요, 경찰.

○김진태 위원 경찰에 접수가 됐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사실관계도 모르고 와 가지고.

○김진태 위원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질의하는데, 당사자가.

○박범계 위원 제대로 신문이나 보고 나오라고.

○김진태 위원 이것이 경찰 어디에 접수가 됐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서울경찰청에 접수가 되어서 지금 관할 서로 이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피고소인이 누구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직은 고소 내부에 들어가서까지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범계 위원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피고소인 박범계……

○김진태 위원 피고소인이 누구예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피고소인 내용으로까지 들어가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경찰에 지금 접수됐으면 검찰에서 이제 지휘를 하게 되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장차 지휘를 할 수도 있고 또 경찰에서 자체 조사를 마친 뒤에 송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태 위원 결국은 검찰에서 결정을 하게 되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당연히 이것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이 고소장 내용을 좀 봤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것이 우리 법사위장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 당사자는 뭘 가지고 또 고소까지 했는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보통은 이 고소장은 사실 어떤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100% 신뢰한다고 꼭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 되어 있나 해 가지고 제가……

○이춘석 위원 김진태 위원, 그것이 현안이야?

○김진태 위원 현안 아닙니까,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건데?

○전해철 위원 그것이 무슨 현안이에요?

○이춘석 위원 상대방 위원 뻔히 앉혀 놓고서, 어디다 그러는 거야, 지금?

○김진태 위원 조용히 하세요, 시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신중하게 해야지. 동료 위원에 대한 것 아니에요?

○권성동 위원 반말하지 말고요.

○이춘석 위원 반말 할 만하니까 하지.

○김진태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왜 중간에 그럽니까?

○전해철 위원 뻔히 보이게, 동료 위원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하시든지.

○김진태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것이 제보가 됐다고 해서……

○서영교 위원 경찰청장한테 해요, 경찰청장에게. 검찰에 신고된 줄 알고 잘못 알고……

○김진태 위원 조용히 좀 해 보세요!

○권성동 위원 조용히 해요!

○김진태 위원 방해하는 거예요, 뭐예요, 질의하는 것을?

○서영교 위원 방해는 무슨 방해예요?

○권성동 위원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서영교 위원 아니, 검찰에 신고된 줄 알고 물은 것 아니야.

○김진태 위원 이것이 제보가…… 좀 조용히 좀 시켜 주십시오.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시끄러워서.

○김도읍 위원 박범계 위원이 그날 그것 할 때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보고 있었잖아요.

○서영교 위원 아니, 경찰에 신고된……

○김진태 위원 좀 조용히 하란 말이에요! 경찰에서 하는 것도 검찰에서 다 지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 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뭔가 하면 지난주에 이미 제보가 됐을 때도 이것이 잘 들리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부분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집권하면 까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 까지',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이렇게 됐는데 이 고소한 기자에 의하면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청취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음성파일에는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까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 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도 '못 가지'라고 자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돼서 그러면 누출이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신동아 기자는 이것을 잘 알던 민주당 전문위원한테'핸드폰을 바꾸면서 '지금 내가 대리점에 갈 시간이 없으니 S2에서 S3로 바꾸는 데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것 한번 줘 봐라. 내가 좀 이렇게 옮겨 주마'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 쓰던 유심칩을 주겠다'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보도된 것 보니까 자기가 녹음한 것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는 그 전문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제보했다는데 이것 내가 준 것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인하더라는 겁니다, '허 기자한테 받은 것 아니다'.

그러면 허 기자가 그렇게 제보했다는 것은 아닌 것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사의 핵심은 그 허 기자로부터 받은 건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규명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고소장만 보더라도 그것이 동일 자료라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비난, 도용·조작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공익제보에 해당하고 전혀 꿀릴 것 없습니다. 제가 '도둑이야' 이렇게 소리쳤더니 왜 소리치냐고 하는 격입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박범계 위원 가만히 계세요.

○김도읍 위원 지금 박범계 위원님은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박범계 위원 김도읍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서영교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도읍 위원 박범계 위원님은 우리가……

○박범계 위원 김도읍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이춘석 위원 오히려 신상발언이니까 더 할 수 있는 거지.

○권성동 위원 이해당사자입니다, 신상발언이 아니고.

○김진태 위원 이것이 직접적인…… 그것이 왜 말이 안 돼요.

○박범계 위원 자, 제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김진태 위원 그게 왜 말이 안 돼요?

○서영교 위원 시끄러워요.

○권성동 위원 건방지다. 시끄러워가 뭐야.

○박범계 위원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당제도, 그렇지요? 선거제도, 국민의 보통……

○권성동 위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박범계 위원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좀.

국민의 보통·비밀·직접·평등 자유선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그것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 틀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그리고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내란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란죄가 다름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의 기능을 잠탈하고 헌법적 기능을 잠탈하는 것이 내란죄입니다.

만약에 이 공익제보가,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녹취물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거의 내란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공익과 관련된 것이고 국익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모두 범죄와의 유관성이 매우 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을 고소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 고소하시고 경찰에서 또 수사지휘 잘하십시오.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제보가 문제가 있다면, 이 제보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김도읍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선 마찬가지입니다.

○김도읍 위원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본인이 피고소인이잖아요.

○박범계 위원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침해하고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내란에 가까운 것이다……

○위원장 박영선 이야기를 꺼내……

○김도읍 위원 이야기를 꺼내든지 말든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박범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태 위원 피고소인이 어디 와 가지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법사위에서?

○서영교 위원 국기문란을 일으킨 거는 그쪽이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에 따라서 수사할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수사할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내사할 것이고 또 그런 것 저런 것 다 해당되기 어렵다고 하면 불문 처리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얼마나 이 대화 녹취물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기에 이렇게 고소를 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선 똑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뭐가 똑같습니까?

○위원장 박영선 왜냐하면 저쪽에서 고소인 얘기만 해.

○박범계 위원 그래서 그 H 모 기자의 심정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고소의 의미는 본 위원 박범계 위원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녹취록에 들어 있는……

○김도읍 위원 아니, 지난번에 발표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장내 소란)

○김진태 위원 피고소인 아니에요, 피고소인!

○박범계 위원 녹취물에 들어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위원 국회법을 지켜요, 국회법을

○서영교 위원 발언하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 법사위원이 발언하는 거예요. 법사위원이 법사위에서 발언하는 거예요.

○박범계 위원 저는 결국은 문제의 본질은 제 입을 막기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으로서……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제재시키세요.

○김진태 위원 아니,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할 겁니까?

○위원장 박영선 뭐가 편파적……

○박범계 위원 헌법기관으로서 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제 입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녹취물이 공개됨으로써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궤멸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네 분들의 이해가 공통적으로 발현된 것이 저는 이 녹취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고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본 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지만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이 내용물에 대한 전대미문의 국가기강 문란 범죄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황교안 관련해서 수사할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

○박범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태 위원님은 한 번 하셨으니까 지금은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고요.

자, 김도읍 위원님 하세요.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우리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해관계인은 사실상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그거를 발표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 안 하고 그대로 경청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법사위가, 저는 매일 그러지 않습니까, 좀 품격 있게 하자고. 김진태 의원이 발언을 하면 그것 또한 우리처럼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새누리당에서 뭔 이야기를 하면 발언을 방해하고, 새누리당이 민주당 발언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박지원 위원 그렇게 많이 했지.

○권성동 위원 아니, 먼저 하니까……

○김도읍 위원 적어도 우리 법사위는 국회법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제보라면 수사 철저히 해라, 나한테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이 국회의 감시를 받는 기관에서는 악법으로 비쳐지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나한테 대해서도 수사 철저히 하라는 게 왜 악법이야? 나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수사……

○김진태 위원 변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 말만 했어요, 어디?

○김도읍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하고, 지금 이 문제가 촉발된 게 어디서부터입니까? 이 문제가 촉발된 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구성 요소인 영해, 국토에 해당하는 영해를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원수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가서 주적의 수괴인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 이야말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자, 항간에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상 간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겠느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적어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자기 영토 포기하겠다는 단초를 만드는 정상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대화록을 보고 싶어 합니까? 국가의 원수께서 내 땅을 포기하겠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이러한 중차대한 본질에 절차적인 부분은 물론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수사도 되고.

저는 요즘 항간의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행위가 뭔지 이제는 수사를 쓰지 말고 냉정하게 한번 여야가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고 영토를 포기하겠다…… 반드시 대화록 봐야지요. 그렇지만 어느 나라 정상도 그런 일 안 합니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이런 단초가 나오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해합니까? 정말 놀랄 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자,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입장을 한번 생각하시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지금 새누리당에서 자꾸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록에 NLL을 포기했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국정원에서 발표한 원본에도 그러한 말이 없고, 단 발췌본이 조작돼 가지고 포기 또는 땅따먹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많은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교적 수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루어진 7·4 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김일성 주석에게 보낸 친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석님께서는 광복 후 오늘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정착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한 민족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이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새누리당식, 국정원식으로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고 종북 원조세력이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친서의 내용은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런 외교적 수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

리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는데 물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지휘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동료 위원의 사실에 대해서 적시를 하면서 마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현재 경찰에서 100일이 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또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법무부장관에게 그거를 따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찰 청장한테 따질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지금 굉장히 덥지요, 우리 장관도 덥지요? 지금 에어컨 못 쓰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괜찮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모든 국민이 짝퉁 원전 부품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업무의 효율성도 안 나고요.

지금 검찰에서 원전 짝퉁 부품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하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 특별팀을 만들어서 검사들을 보강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많은 성과도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자수하면 정상참작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후 자수자가 많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자수자가 꽤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철저히 수사해 주시고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잘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한국일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일보 회장과 참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를 위해서 목포에도 오시고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저녁 우연히 밤늦게 MBC '2580'을 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편집국 폐쇄가 되고 그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했지만,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격려 방문을 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해결되겠지, 그 회장의 인격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일보를 인수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어서 거기를 좀 소개를 할까 하는 것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상 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1분만 주세요.

참고 있는 것은 제 양심에도 문제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이 이렇게 파괴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저도 오늘 법사위가 늦게 끝나면 못 가고 내일이라도 한국일보 기자들 농성장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소·고발이 돼 있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참고인으로 전 한국일보 사장을 두 차례인가 조사했는데 그 수사 진행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서둘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거는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일보 발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200여 명의 기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또 회장도 그런 상태로 계셔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참조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 저기요……

○위원장 박영선 예,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오늘 험한 공방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제가 몇 번이나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곳에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가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질의 여러 번 했지요, 우리 법무부장관께?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적법한 공익제보자는 보호되어야 됩니다.

○서영교 위원 예, 도둑질을 해 가는 도둑놈을 본 증인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저 자가 도둑놈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도둑이 돌아가면서 '내가 아니라 재예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가 도둑이고 누가 목격자인지 제대로 가려 줘야 합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험한 상황을 보고 '도둑이다'라고 소리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내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 박범계 위원

이 공개한 대화록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밝혀졌습니다. 사실의 내용이 얼마나 험하고 무서운 것이 들어 있는지 그것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NLL 포기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만나서 NLL 포기하겠다, 국민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니 대화록이 보고 싶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포기하는 발언이 없었다는 거를 정확하게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상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런 내용은 없습니다. 바로 옆에 보십시오. 6자 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저에게 보고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해 줘서 감사하다는 것이니 누가 보고를 받은 것입니까?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밑에 정문헌 의원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앞으로 NLL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옆에……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땅따먹기'라고 하는 표현 전문에 없습니다. 앞으로 NLL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도 없습니다.

다음 서상기 의원의 발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확인했다' 이거는 이야기했는데 이거 가지고 옆에 노무현 대통령 'NLL 가지고 이거를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옛날 기본합의의 연장선상에서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NLL은 현실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발언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대변인 노릇, 변호사 노릇……' 전 진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문헌 의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문만 열어 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얘기할 것이다. 재촉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지 '대변인 노릇, 변호사 노릇'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정문헌 의원이 '수도권에서 주한미군을 다 내보내겠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나옵니다. '2사단 철수하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 있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NLL 포기 발언이 있고, 어디에 국민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있습니까? 있는 발췌록이라며 먼저 이야기한 사람, 발췌록을 봤다며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김무성 의원이 또 봤다고 하고, 권영세 의원이 봤다고 하고, 대통령 기록물은 보아서도 안 되는데 그것을 봤다고 하고,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런 것을 호루라기를 불어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비굴하다고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발췌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발췌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저도 관심이 많다, 김정일 위원장님' 세 곳이나 위원장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에는 '저는'은 '나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도 관심이 많다, 김정일 위원장님'에는 '님'자가 붙어 있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칭 사용을 발췌록이라며 왜곡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온 겁니다.

다음 거친 표현으로 왜곡합니다. '장관급회담 안 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할란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본 적도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저렇게 넣어 놓습니다.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고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되서'……

○위원장 박영선 1분만 더 주세요.

○서영교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고 합니다. 뒤로 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발췌록이라고 내놓았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밑에 NLL 가지고 이거를 바꾼다, 어쩐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뒤에 그 내용이 아니라 그거는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위로 다시 가겠습니다.

'나는'을 왜 '저는'으로 바꿉니까? '김정일 위원장'을 왜 '김정일 위원장님'이라고 바꿉니까? 상대에게 대화하면서 님이라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꿋꿋하게 NLL 포기 발언 없고 국민 포기 발

언 없는데 마치 먼저 봤다고 소리 지르고 양치기 소년처럼 외쳐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근거를 잡았고 그것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불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께서 이 내용 철저히 조사해 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박영선 위원 충분히 하셨잖아요.

○김진태 위원 아닙니다. 저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영선 현안 질의 안 하신 분한테만 현안 질의……

○전해철 위원 그만하시지요.

○김진태 위원 우리도 발언권 주세요!

○전해철 위원 하면 또 우리도 하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김진태 위원 저쪽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영선 아니, 못하겠어요.

현안 질의 한 분씩 다 돌아가고 김진태 위원님한테 계속 발언기회를 드릴 수가 없어요. 김진태 위원님 오늘 네 번 발언하셨어요.

○권성동 위원 아니, 발언시간……

○위원장 박영선 시간으로 따져도요, 시간으로 따져도……

○김진태 위원 어떻게 발언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언제부터?

○위원장 박영선 그게 아니라 일단 5분씩 다 돌아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세요, 하시고 싶으면. 왜냐하면 혼자서만 지금 네 번 발언하셨고……

○김진태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마지막에라도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선 권성동 위원님 하실 거예요?

권성동 위원님도 세 번째 발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권성동 위원 내가 무슨 발언을 했어요, 현안 질의 한 번도 안 했는데?

○위원장 박영선 아니, 발언을 세 번째 하신 거라고요.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했지 현안 질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히 항의합니다.

국회법에 발언시간은 제한이 있지만 발언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발언하고자 신청을 하면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발언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횟수에 있어서도 민주당 위원의 발언횟수와 새누리당 위원의 발언횟수를 비교해 보면 민주당 위원의 발언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다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하고요.

우선 NLL, 국정원의 회의록 발췌본이 잘 된 거냐, 정확한 거냐, 정확하지 아니한 거냐가 왜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로 나타나야 되는지 참으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이 법사위 현안 질의를 악용해서 NLL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는 의사와 관계없는 점을 지적해서 발언을 중단시켜야 되는 것이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포기를 했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계속해서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발췌본에 의하면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서영교 위원이 발췌본이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회의록 전문이라고 비교 글을 저기다 게시를 했는데 회의록 전문을 어떻게 봤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회의록 전문은……

○서영교 위원 제가 언론사 보도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지요.

○권성동 위원 회의록 전문…… 그 언론사 보도도 어떻게 입수가 됐는지……

○서영교 위원 언론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성동 위원 조용히 하세요! 남 질의하는데 왜 자꾸만 끼어듭니까!

○서영교 위원 아니, '서영교 위원'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진태 위원 조용히 해요!

○서영교 위원 언론사 보도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안 했어요?

○권성동 위원 서영교 위원!

○서영교 위원 발언할 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김진태 위원 조용히 해요, 조용히! 조용히 하라고요!

○서영교 위원 발언할 때 얘기했습니다, 언론사 보도라고요.

○위원장 박영선 조용히……

○김도읍 위원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든지 해야지.

○김진태 위원 조용히 하라고요. 목소리 크면 다야, 정말!

○노철래 위원 조용히 해요.

○권성동 위원 서영교 위원 발언, 공해입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아니, 언론사 보도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진태 위원 조용히 합시다, 질의하는데!

○권성동 위원 언론사 보도도……

○전해철 위원 이야기하시던 거 빨리 하세요.

○권성동 위원 언론사 보도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들을 때는 마치 회의록 전문을 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기다가 언론사 보도라고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 화면을 보는 국민들은……

○서영교 위원 속기록 보세요, 언론사 보도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권성동 위원 조용히 하세요.

○노철래 위원 그만해요.

○서영교 위원 아니, 언론사 보도라고 했는데 왜곡하는 거예요.

○권성동 위원 그래서 회의록 전문을 비교하면서 마치 발췌본이 잘못됐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제가 그 발췌본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정일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서해 북방군사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면—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군대가 다 철수하고 등등 해요—좋지 않겠느냐, NLL 쌍방이 포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김정일의 포기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을 포기했다고 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포기 안 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저는 더 이상하다. NLL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했으면 그게 NLL 포기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꼭 본인 입으로 'NLL 포기하십시다' 이렇게 해야지 포기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이상…… NLL에 관해서는 법사위 현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다 얘기하고?

○전해철 위원 제가 할게요, 현안……

○서영교 위원 아니, 아까 그 세 사람은……

○위원장 박영선 잠깐만요, 잠깐만.

서영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시고……

○서영교 위원 고발된 상태입니다.

○전해철 위원 저는 이야기 안 했으니까……

○서영교 위원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선 권성동 간사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겠는데요.

법사위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 그럴 때는 언제고 또 새누리당 위원들이 발언하면 그것이 네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계속 발언기회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법안과 현안 질의를 나눴고요. 제가 여기다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편의주의적으로 발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면 속기록 봅시다, 누가 발언 더 많이 했는지. 민주당 위원이 말을 많이 했는지……

○위원장 박영선 전해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일단 정말 여야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법안이 있어서 이 법안을 통과해야 될…… 물론 야든, 여든 국민의 열망이 있지만 그것을…… 여당이 오히려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야가 바뀐 이 현실이 저는 답답한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무부장관께 우리가 상설특검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게 누구입니까? 김진태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거는 경찰청장에게 이야기해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수사를 박범계 위원이 당당하게 받겠다 하고 동료 위원에 대한 문제이고 그냥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면 적어도 절제를 해

야 될 그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법무부장관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공세로 동료 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상임위의 금도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NLL 문제입니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할 이야기도 많고 또 국정조사, 내일 있는 본회의의 의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취지는 약간 완화했지만 또한 김도읍 위원이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논란을 하는 가운데서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어떻습니까? 배는 아니지만 3 대 7, 4 대 6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전문 그리고 녹취파일, 사전 회의록, 이후의 사후보고 회의록 모두 공개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외교적 결례에 불구하고 모두 공개해서 이제는 다 국민들에게 보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응하면 됩니다. 이거를 정치공세로 해서 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나와 있는 전문과 발췌본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했다, 안 했다 이런 공방은 그만하자 이렇게 충정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런 논란할 때 제가 하나 말씀을……

저도 그때 준비…… 회의 참석자로 말씀드리면 전문을 보시고 발췌록은 보지 마시고요, 전문을 보시고 10·4 합의문을 한번 보십시오. 한 10개 항 이상이 죽 나와 있는데 해주 문제, 서해평화지대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왜 전문에 나와 있는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 합의문이라는 것이…… 이틀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경과가 무엇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협상을 했던 이유가 결국은 10·4 합의문 선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전문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10·4 합의문을 읽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덧붙이면 이렇게 나온 석상에서 이미 외교적 결례 그리고 국제적 망신, 앞으로 향후 엄청난 걱정일 때……

다시 더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작을 수도 있지만 녹취파일을 또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독특한 말의 형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 두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거듭 강조하지만 NLL 문제, 오늘 법사위에서 처음 꺼낸 것도 새누리당이었지만 이전에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가 나왔을 때 또 갑자기 꺼낸 것도 새누리당이었고 그리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또 갑자기 꺼낸 것도 새누리당이었는데 더 이상 정치공방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과 원본 다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아까 녹취록 관련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NLL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 그거는 법무부장관 현안에 맞고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는 것은 또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검·경 수사권 배분과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결여한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위 권영세 녹음파일 공개가…… 지금 박범계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사를 정확히 하라고만 했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도 그렇게 제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발언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발언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피고소인 신분입니다. 국회법 제48조제7항 '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중략)' 이렇게 해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춘석 위원 아니, 저래 놓고서 선거법 위반해 놓고 법사위 왔잖아, 당신부터! 그래 놓고 이거를 왜…… 그때는 우리가, 야당이 말 한마디 했어?

○김진태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전해철 위원 동료 위원에 대해서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김 위원님.

○김진태 위원 자기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전해철 위원 아니, 김 위원의 선거법 위반을 우리가 얘기했냐니까요.

○김진태 위원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전해철 위원 김 위원의 선거법 위반을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김진태 위원 조용히 해 보세요. 그 얘기 지금 했지요? 아까 위원장께서는 새누리당에서 고소인 쪽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 의견 기회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해철 위원 이제 그만 하세요, 그만!

○김진태 위원 우리가 고소했습니까? 우리가 고발했어요? 지난주에 법사위에서 저런 문제 제기를 할 때부터 제가 저거 음습한……

○이춘석 위원 열 받아서 못하겠어!

○김진태 위원 범죄의 분위기가 풍긴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도청의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사자가 지금 고소·고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는데 뭐 그렇게 찔리는 게 많고 뭐가 그렇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NLL에 대해서 전혀 현안과…… 지금 법사위 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본말전도, 적반하장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장, 오후 회의에서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이어서 실무회담 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지만 구상은 발표해도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예,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포기가 없다고요? 그래, 포기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해철 위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그만하세요!

○김진태 위원 자진상납입니다, 자진상납!

○전해철 위원 김 위원, 그만하세요!

○김진태 위원 영토포기!

○위원장 박영선 그만하십시오, 이제.

○전해철 위원 같은 이야기를 몇 번 합니까!

○김진태 위원 위원장님!

○서영교 위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김진태 위원 자신이 속한 당 위원들 얘기하면 추가시간까지 주고……

○전해철 위원 같은 이야기를 몇 번 하잖아요!

○위원장 박영선 김진태 위원님이 오늘 발언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발언총량이 한 30분쯤 됩니다.

○김진태 위원 발언횟수나 전체시간을 한번 따져 보세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도 제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이춘석 위원님 얘기는 새누리당 위원님들 중에 선거법 걸렸을 때 야당에서 단 한마디도 안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NLL 발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발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정상회담록에 있다고 칩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자제하세요.

○노철래 위원 위원장 됐습니다, 이제. 진행합시다! 자꾸 위원장이 또 얘기하면 빌미가 되고 그러니까.

○위원장 박영선 법무부장관님하고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나오셨는데 아마 충분히 들으셨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많이 반영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말씀드리는데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은 이번 주까지 법무부의 입장을 내주십시오.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저도 앞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께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로 가고 있고 이러한 상태로 계속된다면 과연 도둑을 신고하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지 그 후유증에 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법조인으로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 1소위 법안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까 법안 제출시기에 관해서 금주까지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의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하신 말씀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1소위 법안에 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2소위 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장관님

들께서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처리하고 그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두 분, 장관님하고 이석하시고 발언하셔도 되나요?

○정갑윤 위원 이왕이면 있을 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예, 정갑윤 위원님!

○정갑윤 위원 제가 시종일관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 생긴 이래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 왔을 겁니다. 특히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한 지가 제가 알기로 1999년인가 그렇게 되는데,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로 도입한 목적과는 달리 운영이 되니까 지금 현재 상설 특별검사제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통령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또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가 공약을 했고 그걸 빨리 지키도록, 실행하도록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지요.

있는데, 사실 법무부장관이 취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이야 다 주장할 수 있지요. 사실 최근에 NLL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이 정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럴 때일수록…… 제가 언제든지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는 데 대해 태클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찾고, 그래서 여야가 서로 할 얘기 하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지금 현재 장관들 다 와 계시잖아요, 전부가. 전부 아침 일찍 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박영선 위원장님답게, 정말 평소에 잘하시잖아요. 잘하시는데 왜 할 때마다 위원장님이 나서 가지고…… 제가 좀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위원장님이 냉정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발언을 얻은 기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NLL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은 NLL에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잘했다', '못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서로 국민의 뜻에 맡기고, 그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관계 당국에 맡기면 됩니다. 만약에 관계 당국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때로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든가 아니면 상설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든가 그렇게 가야지, 이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앉아서…… 지금 전 부서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선 예, 그러면 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계속)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백재현·배기운·전순옥·우윤근·강기정·김동철·유성엽·안민석·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1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계속)
1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양승조·남인순·김용익·김성주·이언주·최동익·김미희·이목희·이학영·전순옥·김승남 의원 발의)(계속)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金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1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金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1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金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金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金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金永柱·이자스민·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명수·안홍준·권성동·김재경·이만우·金永柱·이학영·경대수·유재중·홍지만·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김희정·김명연·유재중·류지영·김정록·신경림·김재경·여상규·이진복·민현주 의원 발의)(계속)

22.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이노근·李宰榮·유재중·김성찬·유승우·윤명희·박인숙·안홍준·조현룡·권성동·이재균·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이명수·윤진식·양승조·노영민·박수현·김태흠·정우택·이인제·이장우·홍문표·송광호 의원 발의)(계속)

(12시15분)

○위원장 박영선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0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신 이춘석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춘석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춘석 위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정해서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도록 일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일회용품의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식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부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각 개별 법률에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각 법률마다 행정제재처분권자, 업무정지기간의 상한 등이 달라 법률 간의 형평성·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부칙에서 적용례를 두도록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부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건설지원센터의 규정 중에서 일부 중복되는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부 규정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류길재 장관님!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김도읍 위원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2소위로 넘어갈 때 전체회의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이 없다 지금, 그렇지요? 시간만 할애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 현장에서 이념적 편향성이 없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에 터 잡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이 될 수 있는 내용,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 오랫동안 통일교육 콘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피교육생들에게 잘 전달을 할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담아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주 다양하고 또 굉장히 정교한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이라든가 통일교육 피교육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따라서 저희들이 통일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통일교육이 보다 잘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깊이 고민을 하고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교재는 정말 객관적인 사실에 터 잡아서 만들어졌고 그 교재가 제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법안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철래 위원님 법안 관련해서……

노철래 위원님!

○노철래 위원 저는 확인 좀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산업통상부장관님,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고 나니까 28일 날 경기도 내 일부 언론사, 경인일보·중부일보·경기일보에서 경기도의원들 한 20여 명을 거명하면서 '황당한 경기도 국회의원' 이렇게 표

시하면서 ‘수도권 규제법 찬성’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물론 20여 명 여야 의원 거론된 데는 본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산집법의 내용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봤더니 본 법안의 개정 취지는 그동안 대·중소기업들을 막론하고 수도권에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및 업종변경을 모두 금해 왔어요, 금지해 왔지요. 그래서 일부 대기업이 편법으로 중소기업의 공장을 양수해서 우회 진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본인도 반대를 안 하고 찬성을 했는데, 일단 경기도 내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매도를 해서 제가 장관님께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산집법의 개정은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수도권 내 기업의 제조시설 설치를 명확히 한 것이지, 추가적으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확실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산집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도권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 정비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것은 예외적으로 신설을 허용하게 되어 있고, 그 신설에는 제조시설의 설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에서 하는 것은 대기업이 기본적으로 우회적으로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그것은 잘못된 보도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잘못된 보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노철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남겨 놓아야 공장 설립하고 관련된 그런 의혹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잘 담아 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다음에 박지원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정갑윤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교육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과는 얘기를 나눈 건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시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지역에 따라서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포화 상태예요. 그런데 앞으로 5·6세도 같이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하고 중복돼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포화 상태인데 이제 어린애들을 같이 할 건데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거예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유·보 통합 문제를 지금 총리실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교육부하고 양쪽이 그렇게 관련되는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다고 하면 지금 그게 굉장히 지역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피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아주 건설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던데 두 장관님이 합의만 되시면 국무조정실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조속히 해 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똑같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다음에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윤 위원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하고 협의가 충분히 된 겁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정갑윤 위원 충분히 됐고요.

장관, 됐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정갑윤 위원 그리고 최근에 안행부가 여론조사 한 바에 의하면 6·25 발발 연도를 물었더니 성인의 약 40%, 35.8%가 모르고 있고 청소년은 약 52.7%가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더구나 최근에 우리가 안보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희박해졌는데 그냥 단순히 통일교육만 하지 말고 통일안보교육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안보'를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희들이 통일교육 내용에 그런 내용들도 한번 어떻게 잘 넣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통일에도요, 안보가 빠진 통일은 의미 없습니다. 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더더구나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관은 그런 소신 없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애초부터 그냥 다 통일교육은 통일과 안보가 함께 진행이 돼야 올바른 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2소위에 돌려보내 가지고 통일안보교육을, '안보'를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10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갑윤 위원 예, 10항.

○위원장 박영선 이게 이미 2소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또 보내자고요?

○정갑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수정……

○위원장 박영선 수정하는 거요?

○정갑윤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지금 10항은 지난번에도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2소위로 한번 갔다 왔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10항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정갑윤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5항·9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7항·8항 그리고 11항부터 23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가 오후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담당 전문위원님이 누구시지요, 의사일정 제10항과 관련해서? 지금 정갑윤 위원님과 김도읍 위원님이 내셨던 안과 관련해서 수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 주세요.

○전문위원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선 타 상임위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원회의 법안이 지금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55항까지입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강기정·김기식·김영환·김현미·노회찬·박수현·배기운·서영교·심상정·유기홍·윤관석·은수미·이상직·이종걸·전병헌·전정희 의원 발의)

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종범 의원 대표발의)(안종범·강은희·김을동·김현숙·강석훈·홍지만·홍일표·경대수·한기호·박대출·정갑윤·안홍준 의원 발의)

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3.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5.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49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3항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4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5항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서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국민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주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요약본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15년 말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3년간 분할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용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및 55항의 법률안은 일부 자구만을 수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3항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55항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정부 법률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재정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원안이 가결됐는데 이 재정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읽어 보면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재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결과 원안으로 의결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이게 세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국가채권 관리에 민간위탁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문제가 있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세 가지 다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런데 지금 이 회수와 추심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에 위탁을 하면 그 위탁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과도한 추심행위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래서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각 부처가 신용정보회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해서 잘 운영을 한다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 근거 규정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개정안 14조의3에 보면 업무 감독이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시정조치, 관계

직원의 문책, 수탁 자격의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사후조치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또 사전에라도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로서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것은 사전조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후조치를 하게 되면 이 법의 취지와 전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실제로 지금 위탁하는 업무 자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종의 사실행위 즉, 주소 확인이라든지 재산 조사 또는 납부 안내 이런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저는 2소위에 회부해서 이것은 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법안인 것 같아요.

재정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이 전혀 수정이 안 됐더라고요, 이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법사위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면 일종의 자구에 해당되는 수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만약 그게 자구에 해당이 된다면…… 저도 그 정도로 자세하게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결을 좀 보류하고 장관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오늘 자구 수정해서 이따가 보내고요. 그때는 장관님 안 오셔도 되니까 보내고, 만약에 그것보다 더 범위가 벗어난다고 하면 2소위로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이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그런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각 선진국에서도 대개 국가채권에 관한 회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런데 위탁할 때 보통 선진국에서도 보면 위탁 범위가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하는 경우에 이것이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추심과 관련해서 추심회사들이 부정한 행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사설탐정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장관님 말씀대로 지금 법사 수석전문위원의 지적대로 여기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를 좀 검토를 해 보고 그러고서 다른 것 의결하고 저희가 갈 길이 바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가 시행할 때는 우선 KAMCO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후에 그런 것을 보아 가면서 저희도 제도를 정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박영선 KAMCO는 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해서……

○위원장 박영선 아니, 그런데 법은 지금 민간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위주로 생각을 해야지 KAMCO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KAMCO는 자산공사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런 문제를 시행령에서 저희가 규정을 하려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살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이게 지금 시행령의 문제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어 보이고요.

위원님들도……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김도읍 위원 참 어려운 살림 사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국가재정을 총책임지고 계시니까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부총리님, 지금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정 아닙니까?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부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아우성이고 봇물처럼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참,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의 포퓰리즘적 사업 전개로 인해서 중앙과 지방이 다 어려워지는 이

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영유아 보육 보조율 인상 문제, 재정을 총책임지고 계시는 상황에서 지금 국회에서—저희들 법사위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예산재정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지요, 거기에 부총리님이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TF팀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지방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인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거든요. 이게 한두 푼 드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왜 결론이 빨리 안 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영유아 보육 관련해서 또 지방재정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금년도 예산 배정과 관련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 할 때 국회에서 정해 준 대로 지방이 부담하지 않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기능이라든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빌어서 이번 기회에 전체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영유아 보육의 법 문제도 다루어야 되겠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지금 이것이 보조금에 관한 기본 법률하고 서로 상충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다뤄 주셨으면 하는……

○김도읍 위원 물론 보조금 보조율이라는 게 일반법,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죽 보조금법이라는 일반법이 있고 일반법 기본 내에서 운용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여기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정말 한정 없다는 것도 이해하는데, 지금 보육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신속하게 정리되어야 된다, 신속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나 용의는 있지요, 의지는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추경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기존의 예비비하고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활용해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서울시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데 동의 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가기로 하고요.

내년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앙과 지방의 전체 차원에서 그러한 지원법을 고려해서 영유아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 6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여기 와서 답변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각 부처마다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 저희가 6월 말까지 안을 마련하려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 박영선 매번 노력만 하다가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 게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각 이해당사자가 걸리고 있어서요.

저희가 9월까지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이런 지방과 중앙 간에 재원 배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리고 항간에는 그 법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느냐 하면 2012년 대선 전에 이것을 대선에 활용하고 또 내년 2014년도 지방선거에 이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재부가 꼼수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국민을 속이면 아마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으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6월 말까지 제출해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무래도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부처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할 때 세목

간의 변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말까지는 하여간 초안을 만들고 9월까지는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 간의 재원에 대해서 그런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경제부총리이시니까요,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곧 경제와 관련된 국민의 약속이고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국회에 와 가지고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경제부총리로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일단 중앙과 지방 간에 큰 틀이 확정되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 전체의 재정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지체된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제50항·제5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제52항·제5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께서는 기획재정부 부서하고 함께 그 부분을 더 논의를 해 주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황영철·최봉홍·안덕수·권성동·노철래·김도읍·박인숙·문정림·박창식·정갑윤·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15시17분)

○위원장 박영선 다음은 오전에 상정하지 못했던 법원행정처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양당 간사 간에 의사일정 제39항·의사일정 제40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내용이 똑같습니다.

39항과 40항, 소위 말해서 약칭 FIU법에 대해서 부처 간 이견이 있으므로 양당 간사님과 또 양 부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나오셔서 절충안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진태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셔서 이것이 지금 전체회의에 계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소수의견을 달아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법원이 재판에 전념해야 될 때다, 그것도 여태까지 하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잘해야 된다, 연구기관을 만들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따갑다는 것, 또 법원에 대한 견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것, 법원이 결코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는 하여튼 반대의견으로 남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소수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김진태 위원님의 소수의견을 달아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의사일정 제39항과 제40항에 대해서 영장주의원칙에 위반된다, 다시 말하면 FIU법에 대한 의견을 각 부처에서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간사 간에 회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먼저 발언하시고 소위원회 회의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입장 표명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FIU 자료에 대해서 영장주의를 취하는 입법례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수사를 위한 자료인데 거기에 영장주의까지 붙인다고 그러면 이미 수사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 수사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서류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법원이라기보다 제 생각으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영장주의원칙도 함께 존중되는 입법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아마 장관님과 행정처장님이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서류가 양 기관에서 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공동의견은 FIU와 관련돼서 미국의 포괄적 정보제출명령제도를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세청도 법원의 승인 없이는, 탈세조사 관련성을 입증할 때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미국 법에 예외를 둔 것이고요. 양 기관 2개 모두 서류의 요지가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법무부·법원행정처 다 참석하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제 나름대로의 의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계좌추적을 할 때 다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좌추적을 했다는 것을 6개월 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만 지금 예외적으로 STR(의심거래정보)의 경우에 통보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56.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김영록·정희수·김을동·김춘진·김한표·송영근·김장실·김태흠·유승우·원유철·서상기 의원 발의)

5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강은희·정희수·김을동·이자스민·김한표·류지영·이만우·김춘진·한기호·고희선 의원 발의)

58.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영록·우원식·이종걸·김우남·강기정·강동원·이미경·이학영·김광진·양승조 의원 발의)

59.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황영철·배재정·최민희·홍종학·정희수·최재성·김영록·유성엽·김성곤 의원 발의)

6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추미애·황주홍·김승남·김성곤·유성엽·주승용·정성호·양승조·강기정 의원 발의)

6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황영철·강기윤·안홍준·홍문표·김상훈·정갑윤·여상규·박성호·유승우·이자스민 의원 발의)

6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우윤근·이윤석·김춘진·박수현·이원욱·노영민·전병헌·임내현·이찬열 의원 발의)

6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신학용·배기운·김성곤·전정희·최원식·정청래·이용섭·장병완·홍종학·박민수 의원 발의)

6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승남·김우남·김윤덕·김춘진·박수현·박주선·배기운·신장용·우윤근·유성엽·윤명희·이낙연·이종걸 의원 발의)

6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황영철·송영근·최봉홍·신성범·김영록·경대수·이자스민·김춘진·김종태·김희정 의원 발의)

6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노철래·김춘진·김우남·김태환·유성엽·윤명희·강석호·정문헌·정희수·하태경·김선동·김윤덕·김재원·박인숙·최규성 의원 발의)

(15시24분)

○위원장 박영선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요약본 9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쌀가공산업의 신고, 영업승계, 행정처분 등의 규정을 삭제해서 이중 규제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제58항·제60항부터 제66항까지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66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59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요, 결국은 이것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이렇게 제공,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당사자의 동의나 또 당사자에게 통지를 통해서 알리는 그런 절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생활의 보호 또 개인 신상정보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FIU법 등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궤를 같이하는 그런 측면에서 59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영선 59항을 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소위……

잠깐, 의결하고 하셔도 되지요?

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김도읍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농림부장관님 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라서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제 또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고, 저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원산지 허위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마이크를 좀 대고 답변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이 부분은 전 농산물에 다 걸쳐서 챙겨 봐야 됩니다. 우리 농림부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조금 도움을 받는 사례가 있고, 특히 화훼류 같은 경우 열심히 잘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한시름 더는 모습을 보고 저도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화훼류들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철저하게 해 주시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역본부가 지금 인력,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김도읍 위원 이번에는 보다 설득력 있게 해 가지고 정부안으로, 검역본부 인력도 보강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도 좀 책정을 해 가지고 정부안으로 제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와 계시고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와 계시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님 어디 계신가요? 다음에 신원섭 산림청장님 나와 계시고 그리고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나와 계십니다, 두 번째 앉아 계십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제58항 그리고 제60항부터 제6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은 2소위로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6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영환·김승남·김춘진·배기운·신장용·이종걸·최규성·추미애·황주홍·홍문표 의원 발의)

68.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세연·김영록·전병헌·홍문표·유성엽·김성곤·황주홍·김재원·김춘진·김재윤·윤명희·백재현 의원 발의)

6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김기선·김진태·송영근·신성범·유승우·윤상현·김을동·윤재옥·김태원 의원 발의)

70.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이이재·유승우·김재원·김영록·권성동·김우남·홍문종·이명수·한기호·김형태·홍문표·조원진·남경필 의원 발의)

71.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이명수·이한성·정희수·함진규·김태흠·박상은·조현룡·이윤석·이종진·이헌승·안효대·이재균 의원 발의)

7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정희수·홍문표·김우남·이자스민·민병주·강은희·김영록·김을동·고희선 의원 발의)

73.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박상은·문병호·이이재·이종진·이노근·조현룡·이헌승·안효대·김태흠·강석호·이명수·이재균·심재철·최봉홍 의원 발의)

7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민식·민현주·권은희·이우현·김세연·이운룡·박원석·김을동·조명철 의원 발의)

75.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민식·민현주·권은희·이우현·김세연·이운룡·박원석·김을동·조명철 의원 발의)

7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민식·민현주·권은희·이우현·김세연·이운룡·박원석·김을동·조명철 의원 발의)

7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박주선·이상민·안민석·김우남·정세균·윤관석·유성엽·김관영·문정림 의원 발의)

7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최재성·노철래·김회선·김도읍·권성동·이춘석·김춘진·박범계·한기호·유기준·유승우·경대수·류지영·조명철·김성태·황영철·이학재·문정림 의원 발의)

79.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신성범·이만우·홍문표·황영철·고희선·이완영·정희수·김을동·김성곤·민홍철 의원 발의)

8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배기운·정성호·최민희·안민석·김재윤·홍종학·이낙연·김세연·유승우 의원 발의)

(15시30분)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67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관상어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관상어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것으로 관상어사업자에게 직접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은 사업자금 지원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기초와 광역의 수준별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핵심관리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바다 모래 채취 행위를 제한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를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연안정비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의 소유자가 위치를 자동적으로 발신하는 장치가 부착된 구명장비를 갖추는 경우 그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동위치추적장치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박상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도서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공유 건조방식 도입에 필요한 지분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담당 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충하였고 분담의 대상을 소유권에서 비용으로 수정하는 등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80항까지의 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7항·제69항·제70항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74항에서 76항까지의 법률안에서요, 이 법률안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마련하자는 내용인데 이거 오늘 아침에 2소위 의결 안건이었던 문정림 의원 건과 같이 정지기간의 세부적 기준이 없고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소위에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다시 한번 법률안을……

○서기호 위원 74항·75항·76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74항·75항·76항이요, 2소위로 보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4항·75항·76항은 2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노철래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노철래 위원 먼저 하세요.

○김진태 위원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72항하고 73항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소위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72항은 자동위치추적장치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재정 부담 초래 등 기재부의 의견 개진 기회가 지금 완전히 생략됐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73항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법률, 도서개발 촉진법 또 해운법 등 다른 법률과 여러 가지 상충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72항과 73항을 2소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노철래 위원 동의하는데 첨언해서……

○위원장 박영선 노철래 위원님!

○노철래 위원 72항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기재부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법안을 올린 이유가 뭔가요? 어디까지 지금,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재부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기재부하고는 사실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노철래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아마 중간에서 내용이 서로 조금 안 맞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상임위 소위에서 할 때 토론이 다 안 되고 그냥 넘어온 것 같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예.

○노철래 위원 그래서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소위로 넘기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 그러니까 위성위치추적 발신 구명조끼 한 1000벌 정도를 지금 현지에 배부해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아니,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법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1000벌 정도를 할 예정에 있고 자동위치추적장치가 없는 구명조끼는 이미 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1000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바꾸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아직 시범운영은 안 하고 있군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예.

○노철래 위원 저도 그러면 2소위로 넘겨 가지고 더 검토를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72항과 73항, 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81항도 하나요?

○위원장 박영선 지금 67항부터 80항까지 상정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제69항·제7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제71항·제77항·제78항·제79항·제8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2소위 회부 법안이 72항, 73항, 74항, 75항, 76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또 추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8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3.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8.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9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1.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2. 海洋科學調査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39분)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81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2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3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4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5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6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7항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8항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9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0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1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2항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입·소유·매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동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계속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마정보를 유사행위를 위하여 복제·개작·전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유사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륜·경정법 등 다른 법률의 입법례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폐기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내리고 농산물품질관리사와 별도로 수산물품질관리사를 두려는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사와 수산물품질관리사를 농수산물품질관리사로 약칭하는 것은 농수산물품질관리사라는 별도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를 각각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합원의 자격을 임업인의 경우 해당 구역 안에 사업장이 있는 자로 한정하도록 하고 조합의 이사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면서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같이 두 번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약칭을 활용하

여 표현을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제84항·제86항의 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2항·제87항·제88항·제90항부터 제92항까지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전해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도읍 위원님 하십시오.

○전해철 위원 89항 산림조합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이 답변하실래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전해철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죽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개정안이? 그러니까 옆의 장관님 두 분이 들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핵심적인 것은 현재까지는 주소지와 사업장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산림조합원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사업장이 있는 곳만 조합원으로 하는 것이 핵심 조항이고요, 그리고 임기가 2년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해철 위원 임기하고 조합원 자격이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농림부장관님, 관련해서 지금 농업협동조합법이 계류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전해철 위원 그것은 어때요, 핵심 내용이? 잘 모르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제가 정확하게……

○전해철 위원 지금 내용은 잘 모르시고?

해수부장관님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계류 중인 것 아시나요? 이것하고 거의 유사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저도 지금……

○전해철 위원 잘 모르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예, 계류된 것은 알고 있고……

○전해철 위원 그래서요, 지금 보면 3개 조합의 내용이 통일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2소위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89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소위로 보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가결……

○서기호 위원 찬성하는데……

○위원장 박영선 일단 가결하고 질의하십시오.

제89항 2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님이 제89항 관련 질문이라면 약간 김도읍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시고……

예, 하시지요.

○서기호 위원 같은 2소위 회부 의견인데요.

추가로 논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이사 임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농해수위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따르면 잦은 선거로 인한 조합원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다른 조합 관련법에서는 이게 4년인 것으로 알고 그런 법이 많이 있는데 그런 법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도 2소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다음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해수부장관님 회의장에서 뵙기가 참, 오늘 장관님께 첫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침 해경청장님도 나와 계시고 한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면 우리 영해선이 있습니다, 영해선이 있고 영해선 밖으로 대형 어선들의 조업금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해경청장님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예.

○김도읍 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장관님께서 우리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해선 밖에 조업금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선들은 자국법의 적용을 받아서 조업금지선 안에서는 조업을 못 합니다. 동지나 해상으로 가려고 하면, 조업을 하러 가려고 하면 영해선 건너고 조업금지선 건너서 그 밖에서 조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 어선들은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해선까지 들어와 가지고 조업을 합니다.

결국 영해선하고 조업금지선하고 이 사이 공간

은 중국 어선들의 독점적 지위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됩니다. 우리 어선들은 여기에서 지금 조업을 못 하고 중국 어선들은 조업금지선을 넘어서 영해선 경계선상에 있다가 우리 해경 감시가 소홀하면 들어왔다가 또 감시가, 우리 해경이 나타나면 나갔다가, 그 안에 중국 어선들이 얼마나 있는가는 해경청장님 잘 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예.

○김도읍 위원 지금 이런 실상인데 수산자원 보호 측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마 오래된 문제인 것 같고 아시다시피 우리 수산업이 고유가 시대에 정말 어렵거든요.

장관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 지금 그 제도가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해결방안은 없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청장님도 해수부에다가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그 사이에서 조업을 하다가 적발돼서 불만이 많은 그 부분 현황도 해수부장관께 좀 보고를 드리고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박범계 위원입니다.

지금 제81항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마사회로 하여금 그 사업 범위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박범계 위원 그런데 과거에 이미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 지정할 수 있고 예산 범위 지원에 관한 규정이 다 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박범계 위원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러한 지원 부분은 부처에서, 장관님이 수장으로 계시는 부처에서 그리고 세부 시책의 시행은 산하기관인 공기업인 마사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역할 분담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사회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중첩적이기도 하거니와 그동안의 역할 분담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관점인데 의견이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마사회가 국내 유일한……

○박범계 위원 짤막하게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이거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마사회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박범계 위원 둘 중의 하나네요, 그러면 기존의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것을 제대로 지원을 안 했다라는 그런 자백이신데, 고백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참에, 저희 지역구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화상경마장 아시지요?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고 있지요? 그런데 도시가 발달하기 전에 과거에는 일종의 교외에 해당하는 지역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달하면서 그곳에 학교가 들어서고 주택가가 들어서면서 도심화가 되면서 실제로 현재 도심 그리고 주택과 학교 근처에 이런 화상경마장이 들어와 있어요.

화상경마장은 뭡니까, 국가가 사행행위인 도박행위인 경마장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엄청난 중독자들을 많이 양성을 하지요. 주말에 가보면 참, 저희 동네는 월평동이라는 동네인데 기가 막힙니다, 이 중독자들의 모습들이.

대법원의 판례에도 서울 서초동의, 한국마사회에서 서초동 도심 한 가운데에다가 화상경마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허가를 받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쟁송에 갔는데 법원이 도심 근처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제한을 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 지난번 장관님은 저한테 견해를 주셨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것은 2소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런……

○박범계 위원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책과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질의에 서면으로 소상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2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

○위원장 박영선 예, 제81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 정갑윤 위원님!

○정갑윤 위원 해양수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원양어업이 불법어로 행위를 함으로써 처벌 강화를 위한 법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예.

○정갑윤 위원 사실 2013년 1월에 미국은 이미 벌써 우리 한국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IUU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에서도 역시 1차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했고 2차 예비 비협력국 지정을 위한 검토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 이런, 사실 우리 국격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사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원양어업이 불법 어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 대상은 보니까 크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2소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의사일정……

○정갑윤 위원 88항.

○위원장 박영선 제88항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선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이게 본래 있었던……

○김학용 위원 잘 설명하셔서 2소위로 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예.

이게 워낙 저희가 지금 제시했던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위의 것을 했었는데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법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수산물 가액의 3배라는 것은 국제적인 규제보다도 좀 더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문제가 저희가 러시아 쿼터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것, 유럽에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또 아프리카 쪽의 유럽과 우리와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발생하는 것도 있다라고 보신다면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 위원님 의견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더 높은 과태료나 이런 걸 물기에는 저희가 지금 외국보다 더 높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좀,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정갑윤 위원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실제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과 미국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지요, 실제로.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 여기 세계 한 10개국이 있는데 이 중에 물론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도 있지만 정말 이런 나라들하고 국격을 함께 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우리 해양수산부는 뭘 했는지 정말 참 그거하고 제대로 교육만 됐었더라도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꼭 어디 법으로 규제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제대로 강화해야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폭 올린 거라서 여기에서 더 올리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이게 안 되면 러시아 쿼터와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러면 뭐……

○박지원 위원 해수부가 지금까지 없었어……

○위원장 박영선 정갑윤 위원님, 좀 상정을 보류했다가, 전체회의에서 있다가 다시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2소위로 넘길까요?

○정갑윤 위원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통과합시다.

○위원장 박영선 그냥 통과시켜 주시겠다고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감사합니다.

○김학용 위원 탁월하신 인품에 따른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영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제84항·제85항·제8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1항과 제89항은 2소위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제87항, 제88항, 제90항, 제91항, 제9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9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최규성·김성곤·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정세균·김민기 의원 발의)(계속)

(15시57분)

○위원장 박영선 다음에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을 상정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전체회의에 계류됐던 통일부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정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93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던 법안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생략하고 대체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93항 도로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종전에 국도의 관리청을 시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 그러니까 종전에는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국가가 또 지방도는 군에서 하던 것을 도에서 한다는 것이 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여태까지 해 오던 국가와 지자체 간의 재정부담 원칙이 변경돼서 현행 도로관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고 또 국도 대체한 우회도로 등 기존에 하던 것이 몰각될 염려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좀 더 따져 봐야 될 문제가 많아서 이것은 2소위에 회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 법안이 2012년도 9월 21일날 저희 법사위에 온 법안인데요. 제 기억으로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세 번째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에는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더 들어가는 법안인데 이 법안을 웬만하면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을 오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저는 처음입니다마는,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50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비용이 5000억이고 그다음에 사실 지정국도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일부 간선 기능이 많은 지방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방공약을 저희들이 실천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 빠듯한 편에 500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고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여기에 쓰는 것보다는 지방공약이나 이런 쪽에 잘 활용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조금 더, 조금 더 해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좀 있으면 1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뭐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 이유를 분명하게 하고, 이것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법안인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 이유는 말씀드렸습

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하고 지자체 간에 재원 배분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그 부분이 있고요.

현행 지정국도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뭐 이렇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단 이 5000억이라는 재원은 다른 지방공약에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할 적에 이것은 상당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선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장관님, 도로법이 1961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에 지금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이 이렇게 시행되어 오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50년 이상 이렇게 시행되어 온 부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나라 돈이, 나라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어려운 지방 살림 더 많이 도와주고 싶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뭐든 다 해 주고 싶은데,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방을 도와줘야 되고 또 지방이 그간에 수십 년간 부담해 오던 것도 중앙이 떠안아야 되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쯤에서 저희들 법사위가 통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봇물 터지듯이 지방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이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의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뭐든 못 해 주겠습니까, 다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의견은 이쯤에서 결론을 내는데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또 의견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 지금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재정도 어렵고 지방재정도 어렵지만 특히나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개별 입법을 통해서 지방을 돕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특히 지방에 위임된 사무 중에서 국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뭔가 부담률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 예산·재정특위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것은 개별 입법을 통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런 총체적인 안목에서 판단을 해야지 개별 입법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2소위로 보내든지 아니면 재정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쯤에서 저희 법사위에서 마무리를 짓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여기서 법안을 폐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2소위로 회부를 할까요?

○김학용 위원 그것이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선 다 동의하시는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3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법안까지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

1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낙연·임수경·배기운·유대운·조정식·최규성·박남춘·김상훈·김세연·남인순·최원식·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1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시04분)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106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7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06항은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입니다—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106항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전체회의 계류 안건이고 제107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문광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광섭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07항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일부 규정의 문구를 수정하는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장관님, 영유아보육법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도 많이 애기를 해 가지고 참 이제는 민망하기조차 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통령 실세시잖아요. 아니십니까?

기재부가 국가재정 사정을 들어서 또는 이러한 지방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어떤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대는데 이것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민심을 움직인—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부분도—5대 과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더군다나 또 기초노령연금 그것도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법률에 근거가 있거든요,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서초구 같은 데서는 거의 소위 파산선언을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태인데, 더군다나 김관용 경북지사 같은 분이—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시잖아요—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건데 이것 기재부장관 하나 설득 못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지금 정부가 보육료 국고지원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오제세 의원이 제출한 이 법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작년에 개정해서 올해부터 그 법에 따라서 국고지원이 됐으면 사실은 이런 갈등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작년에 개정이 안 되고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금년 것은 예산안 합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죽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해야 돼서 지금 20%, 50% 가지고는 도저히, 지방재정에 압박이 너무 커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데에는 여러 번 제가 정부 내에서도 얘기했고요. 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리고 재정개혁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서 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 측 입장은 지금 그것만 딱 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 전체를 다시 한 번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한 6월 20일까지는……

○박범계 위원 결국은 9월로, 비가 오니까 잠시 비 피하고, 처마 밑에 들어가서 잠시 비 피하고 말자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범계 위원 무슨 지방재정특위니 무슨 재정특위에서 논의하자, 보조금에 관한 규정들을 이번 참에 전부 다……

한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선 예.

○박범계 위원 이참에 정부의 지방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자, 말씀은 참 현란하고 좋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5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오래된, 일종의 경제 어떤 복지법안인데 그것을 대통령 후보자께서, 박 대통령 후보자께서 받아들이셔 가지고 당신 것으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산하에 있는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케이스로 다루어서 거기에 맞게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지 '이것 이참에 다 보자', 이것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래서 하지 말자는 얘기로 흘러서는 절대 안 되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약속한 거니까 어떻든 지방재정에 압박이 되

지 않도록 조만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박지원 위원님!

○김회선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박영선 예, 먼저 하세요.

○김회선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또 기재부장관 계실 때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서초구 같은 데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기재부장관께서는 지금 국회에 있는 예산·재정특별위원회, 여야 같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김회선 위원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9월 정도까지는 조금 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던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서울시라든지 서울 시내에 있는 지자체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때까지는 견딜 수 있는 사정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지금 이 법을 어떻게 개정할까 하는 것은 내년도 문제이고, 내년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서울시 이 문제는 작년에 이미 여야 간 합의해서 예산안 통과할 때 추가로 필요한 부분 7214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5607억은 국고에서 더 지원해 주고 나머지 1200 몇억은 지방에서 한다 이것이 합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은 그 합의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요 내년부터는 매년 합의할 수 없으니 법으로 하든 아니면 합의가 되면 시행령을 고쳐서 부칙을 고쳐서 하든 그것은 종국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도 그것을 빨리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간 현실적으로 기재부에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회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주무 부처시니까 조금 더 푸시(push)를 하셔서 이번에는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복지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지금 장관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웃으시면서 답변하니까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봐서.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니,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박지원 위원 넘어갈 수 없는 문제지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관께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시니까 지역에 가시면 젊은 주부들로부터 또 해당 기관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오늘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105개 지방공약을 틀림없이 지킨다 하면서 소요예산이 124조예요. 그런데 영유아법 이것이 더 시급하고 더 먼저 나온 건데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제가 지방예산 부분은 아직 잘 모르……

○박지원 위원 아니, 아무튼 124조라는 돈이 정부에 있어야 공약이 이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또 누구보다도 국회 사정도 잘 아시고 국민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9월까지 하겠다는 그 얘기는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이 부분을 확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위원 반영하겠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그렇기 때문에 9월 말까지 하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법안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

○박지원 위원 아니, 9월 달까지는, 지금 7월 임시국회를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하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7월 달에 할 것 없다라고 했으면 그 사이에 국회 없는데 법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거니까 지금 통과하고 9월 달에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제 생각에는 그것이 합의가 다 된다면, 지자체와 다 해서 합의가 된다면 바로 시행령 고쳐 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

데, 그런 방법도 있지요.

○박지원 위원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박지원 위원 9월 전에 장관께서 물러나시는 것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자꾸 웃는다고 그러시는 바람에 웃지……

○박지원 위원 아니, 웃어도 좋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하여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안 물러나시면 우리 또 여기서 만나서 얼굴 붉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이 부분.

○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시행령만 고칠 거면 지금 법사위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원내대표한테 맡기는 게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일 소모적인 논쟁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복지부장관으로서, 법을 고치면 약간 법체계상에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합의가 되면……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수정안 내세요, 본회의에서. 여기 와서 자꾸 이거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얘기하시는 거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사실은 시행령을 고쳐버리는 게 더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통과시킬까요?

○박지원 위원 지금 사실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장관이나 정부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되어야 본회의 상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지의 표현으로 법사위에서 오늘 통과시키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저희야 복지위 상임위야 다 통과를 했으니까.

○위원장 박영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행령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원내대표 간에 본회의 상정을 논의하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장 박영선 아니, 기재부장관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그게 사실은 법체계상은 맞는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20, 50인데 40, 70으로 이렇게 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선 그러니까 그 율을 조정하는 문제라 시행령에 두는 게 훨씬 더 유동적이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래서 그게 예산당국으로서는 과연 20, 50이…… 40, 70이 맞나 이런 거를 한번 보는 거겠지요, 전체적인 균형에 맞춰서.

○위원장 박영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 틀만 돼 있는 거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 틀만 돼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를 자꾸 이런 법 해 가지고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 같고, 정말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법사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원내대표 간 합의해서 상정하면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그래서 장관님 오시기 전에 경제부총리께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법체계상의 문제, 시행령만 고쳐서…… 법으로 규율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국가재정, 살림살이거든요. 살림살이인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도우면서도 국가재정도 어느 정도, 중앙정부 재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조금법에 보면 기본적인 보조율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을 고친다, 안 고친다, 예를 들어서 시행령으로 한다 그러면 법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금법에 이렇게 돼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시행령에서 보조율을 바꿔 버린다고 하면 안 할 말로 보조금에 관한 모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니, 시행령의 그 별표를 바꾸는 거지요.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법 기본법, 일반법에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올려 달라, 그다음에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 않습니

까?

조금 전의 도로법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던 도로관리사업을 광역 내지는 중앙에서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장관님께서도 의지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김도읍 위원 그렇지만 중앙정부도 어느 정도 충격을 줄이고 지방정부를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자꾸 국회에서 이렇게 재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고?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앙정부도 살리고 지방정부도 살릴 수 있는 묘책을 지금 강구한다고 하고 있고 국회의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하니 성급하게 저희들이 법으로 하기보다는 기왕에 기다린 거 조금만 우리 법사위에서 인내를 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만 더 기다려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예,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시행령을 고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이런 취지지요? 지금 현재 법이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20%, 50%로 돼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래서 그거를 국가가 더 좀 짐을 지고 싶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늘린다, 이거를 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손을 보는 게 맞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런 얘기지요. 법체계상 시행령의 별표에서 국가보조금 비율이 나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시행령이라는 거는 결국 보조금법 시행령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보조금법 시행령이지요.

○김진태 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이게 이렇게 답답하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법은 통과시키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으로 조정하면 되는 게 아니냐, 원내대표 간에 이거를 서로 한다'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법이 통과되어서 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가지고 되는 것과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 그 시행령은 보조금법 시행령입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이상하게 꼬였는데 시행령으로 될 거 같으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처럼 보조금법 시행령을 가지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그렇지요. 제가 말한 시행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겁니까? 다시 한번 시행령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 보조금법 시행령을 손을 대야 된다는 거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 그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김진태 위원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김진태 위원 지금 나온 개정안이라는 거는 영유아보육법에다 국가가 질 부담을 서울은 40%, 지방은 70% 이렇게 못 박자는 건데 40%, 70% 이런 게 다른 법에 예도 없었고 이거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서 나온 거를 하든, 아니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건 간에 이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에 한해서 국가가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금년 거는 작년에 합의한 대로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도 빨리 통과시켜서, 금년에도 또 그 법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 혼란을 초래하는 거지요.

○김진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할 때는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데 아까는 '법은 통과시키고 시행령으로 해결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취지

가 아니었잖아요?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키고 그 법 시행령으로 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 법 시행령으로 하자는 거는 전혀 아니지요.

○김진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박영선 예,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장관님도 기존에 관료분이 아니라 정치인이시잖아요? 또 국회 잘 아시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전해철 위원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법 지금 상임위 할 때마다 올라오는 것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그렇습니다. 저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전해철 위원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전해철 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이거를 장관님도 죽 국회 하셨던 것을 생각해서, 그런 취지나 이런 것은 또 여야 위원분들이 다 알고 있고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모적으로, 지금 같은 이야기를 저만 해도 한 이삼십 번을 법사위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장관님도 얼핏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위원장님 제안한 대로 이거를 법사위 통과시키고, 어차피 본회의야 이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서 충분하게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장관의 입장 말고 그냥 죽 정치하실 때 생각하더라도 훨씬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전에 속내도 얼핏 보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신껏 장관께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지금 서로가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어때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저는 이게 하도 논란이 많이 되니까 법사위를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에서 잡든 법사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든 그거는 별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요. 법체계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법사위를 이렇게 통과하는 거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사위에서 판단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요.

○전해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또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위에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지금 장관께서 이야기하는 9월 중에 답변을, 좀 더 안을 내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여기서 잡아져 있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장관께서 이야기한 대로 법사위에서 하든 또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가 되든 같은 거라면 이제 좀 그만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우리 민주당 위원들의 이야기에 그냥 정치를 하시는 입장으로도 동의는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래서 그거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렇게 잡는 거라면 그러면 별 차이가 없지요. 여기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가든지 사실은 별 차이가 없지요. 논의를 자꾸 하시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게 법사위를 통과하니까, 법사위라는 거는 법의 체계랄까 이런 거를 다 보는 데인데 그게 약간 체계적으로, 이거는 영유아보육법에 들어가는 거보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을 개정하는 게 법체계상 더 나으니까 법사위에서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법사위가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 같이 보여서 제가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영유아보육법이 상임위 통과된 거는 제가 장관되기 전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통과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든 이 부분을 국고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는, 보육에 관해서 워낙 지방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20%, 50%,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에 있는 그거보다는 더 국고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데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해철 위원 제가 마무리하면 아까 장관님이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러면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 오늘 통과시키면 좋을 거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보조금법의 시행령이 되든 법률을 개정하는 거를 정부에서 당당하게 내세요, 가능한

빨리.

○위원장 박영선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왜 논의가 못 됐느냐는 이유를 따져 보면 2012년도 대선 앞두고 이거 선거용으로 통과시킨 거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윤 위원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부총리께서 오셨을 때 김도읍 위원께서 현안 질의 측면에서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수용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질의를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장관께서는 꼭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보육 문제가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아까 앞에 부총리께서 와서 충분히, 지금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차원을 넘어서서 재정 운용 측면에서, 재정특위도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서 다루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래서 제가 확정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부분은 복지부 소관이 아닙니다.

○정갑윤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우리가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 그렇다 하시면 부총리 다시 불러 가지고 다시 한번 부총리의 의견을 장관이 있을 때 묻든지 그러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어차피 아까 부총리하고 9월 달까지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2소위에 넘겨 놓든지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 결론을 내야지요, 결론을.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9월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해 주시면,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각 구청별로, 특히 서울시내에 지금 이게 난리가 났는데 9월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거는 국회에서 보다 더 기재위나 이런 데랑 같이해서 폭넓게 논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요……

○위원장 박영선 아니, 폭넓게 논의한 지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실질적으로 20%, 50%를 몇 %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재정적 판단을 좀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에서 할지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재정까지 다 감안해서 논의가 돼서 빨리 확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부분을.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이거 9월까지 안 되면 제 생각에는 법사위에서 자꾸 이거 가지고 이렇게저렇게 할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9월까지 안 되면 그냥 법사위 통과시키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아니면 수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법안을 폐기하든지 그거는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법사위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를 여기에서 매일……

○김진태 위원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고요……

○위원장 박영선 아니지요, 그런 담보가 있어야지 매번 이거 가지고……

○김진태 위원 미리 통보를……

○위원장 박영선 미리 통보가 아니라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정부가. 약속 지키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게 세 번째 연기되는 거예요.

○김진태 위원 소위로 넘기고요……

○박지원 위원 그런데 본회의 의사일정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가 되어야만 상정되니까 법사위 통과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원내대표 선에 옮겨 놓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박범계 위원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예.

○박범계 위원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보니까 부총리께서 차관님들하고 보건복지부장관님이 답변하는 거를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부총리님을 지금 이 자리에 모셔 가지고 원래……

○위원장 박영선 아까와 똑같은 게 또 반복되고 시간만 가요. 아까 답변 다 하셨어요.

○박범계 위원 모셔 가지고 두 분이…… 재판에도……

○노철래 위원 대질해?

○박범계 위원 대질이라는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니……

○박범계 위원 가만히 계세요.

저는 비겁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총리님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저는 근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이 법률을 법률의 형태로…… 법률의 형태로 통과가 되면 결국은 매년 같은 비율의, 같은 금액의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재부가 이거 반대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9월에 가서 포괄적으로 이거저거를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장관님 생각이지 기재부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 법안을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또 9월로 넘긴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비율의 조정이 문제인지, 전혀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인지 분명히 가부간에 여기서 입장을 정해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107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선 다른 겁니다, 법안 내용이 완전히.

○이주영 위원 그래도요.

○위원장 박영선 왜냐하면 어차피 제106항은 반대하셔서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107항은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30분간 정회를 하고 두 분 장관님이 의논하셔서 5시에 여기 와서 정견 발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이주영 위원 그렇게 급하게 해도 되나?

○위원장 박영선 예,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간사가 자리를 비웠는데……

○위원장 박영선 간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협의 중에 저한테 잠시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위원들이 지금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로 넘겨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까지 하고 지금 시간도 이렇게 늦었는데……

○위원장 박영선 왜냐하면 이게 새누리당의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위원들은 그거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이 그렇게 결정하면 다 그렇게 갈까요?

○김진태 위원 그거는 반대로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래서 지금 전체회의에 계류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김진태 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장 박영선 그러니까 자꾸 한쪽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새누리당 국회가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소위에 가서 더 논의하자는 건데……

○위원장 박영선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매일 지연작전이지요. 그리고 내년 선거 앞두고 무슨 선물 주듯이 또 그렇게 해 갖고 또 선거에 이용해 먹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김도읍 위원 아이, 위원장님.

○전해철 위원 자자, 이렇게 하시지요.

○김진태 위원 그리고요…… 제가 마지 마무리하게 해 주세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여러 위원들 돌아가면서 다 질의하는 과정에 분명히 본인의 입장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부총리도 오셔서 질의 충분히 했습니다. 그것을 또 국무위원들을…… 소위로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또 불러서…… 아까 위원장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영선 그런 뜻이 아니라요, 지금……

○김진태 위원 정견 발표를…… 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저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부총리께서 저한테 이 자리에 참석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깥에서 여기 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속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해철 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소위 가도 되니까 들어 보시지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영선 예.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조금 아쉬운 점이 다음 지방선거 때 또 이거를 선거에 이용해 먹는다는 말씀은 너무 지나치십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정부가 약속을 지키면 되지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도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양당에서 퍼부어 놓았던 포퓰리즘적인 정책들, 저도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보육료 문제는 생각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 지금 갈수록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아이들 보육과 교육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의 근간인,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위원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돈이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통 공약만 하더라도 많습니다. 그런 거를 다 이루어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런 살림살이가 어렵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렸지만 큰 틀에서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정부에서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만 더 참아 가지고 좋은 대안이, 정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히 큰 충격 없이 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온다면 조금 인내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마 다음 선거에…… 어떤 선거를 치르더라도 제가 우리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포퓰리즘적인 이런 대선·총선 공약들은 정말 남발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영유아 보육 문제는 국가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 의안 제107항에 대해서는 별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먼저 의결을 하자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107항을 의결하시고 정회를 하셨다가, 기획재정부장관님은 지금 여기 나오셔서 자꾸 뭔가 얘기를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장관님 두 분이 의논을 하셔서 시간이 길지 않도록 정회 끝나고 잠깐 짤막하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7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과 기획재정부장관님, 충분히 대화를 나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고요, 또 이렇게 영유아 보육과 건전재정에 대해서 깊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포인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영유아 보육에 절대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지방과 중앙 간의 전체적인 재원과 기능의 측면에서 이것을 보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중앙과 지방 간의 문제는 앞으로 당면한 굉장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있지만 9월까지 이러한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이라든지 재원배분 문제에 대한 것을 마련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영유아 보육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우선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배정을 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이런 법

개정 문제라든지 지방과 중앙 간의 재원배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영유아 보육 문제는 최고의 프라이어러티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튼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 재정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구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의 문제랄지 또는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까지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문제를 한번 검토하시고 그 이후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이런 중앙과 지방 재정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부세라든지 소비세라든지 또는 세목 간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 간의 이런 재원배분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런 고려하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부분 부분 다루게 되면 결국 재정을 총괄하는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지금 현재 보조금 기본법하고의 법적 상치 문제를 떠나서라도 전체적인 패키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만일 9월까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은 저희가 예상하기에 상당 부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9월까지 하여간 협의를 마련하도록 하되, 정말로 만약에 그런 협의과정이 지연되면 내년 예산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약속을 지키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가 9월까지 예산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리고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얘기와 경제부총리님 얘기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무회의에서 그 부분에 관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지원 위원 복지부장관께서도 완전히 부총리에 동의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상의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부장관님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복지부 입장은 어쨌든 보육 문제가 재정 문제로 인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재정 문제의 모든 것을 9월까지, 지금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함께 하신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어떤 약속을……

○박지원 위원 아니, 9월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당연하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을 맡고 있는……

○박지원 위원 아까 말씀했는데 지금 또 한참 생각하시니까 오리발 내미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정확하게 질문의 포인트를 좀……

○전해철 위원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걸 다 정리하고……

○박지원 위원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특히 복지부장관은 지역구 국회의원 하시면 지역구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로부터도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복지부장관도 함께 약속해서 꼭 지켜 주셔야 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그것 당연한 얘기지요.

○박범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박영선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오늘 우리 회의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두 번째는 적어도 재정특위에서 정부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하겠다, 그 협의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근본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은 결국은 지방도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물론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런 취지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물론이고. 정부, 국회, 지방 다 합의하는데 문제는 그 합의의 내용이 법률에 근거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영유아 보육료와 관련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지속 가능한 패키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지속 가능한 패키지, 좋습니다.

설사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금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건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인데요. 저희는 예산 편성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하겠다……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다 질의가 끝나셨으면 두 장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건 계속해서 우리 법사위에 계류시켜 놓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선 예.

---

10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문정림·유성엽·김동완·강동원·최재성·이용섭·김성곤·황주홍·이상민 의원 발의)

10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1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1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7시38분)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108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9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1항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2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문광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광섭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종합요약본을 보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08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109항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대안)은 검토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동일한 명칭 외에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다양한 다문화가족지원단체의 결성·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센터의 1345 서비스와 중복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며 기타 경미한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11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의 법정형을 7년

이상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개별 정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집행유예를 금지할 경우 일반 흉악범죄 등과 비교하여 비례·형평에 반하는 우려는 없는지, 너무 세분화된 기준에 의해서 처벌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즉 주관적 구성요건의 판단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 최근 전부 개정으로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이 법의 시행 성과를 분석한 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기타 경미한 자구 정리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1항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대안)입니다.

국가·지자체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가부장관이 위원회의 성별 현황을 공표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모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에 반하거나 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안행부 소관 사항으로 기본법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외에 이 법에서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율 규정을 두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 부칙에서는 위 성비 할당 규정을 2017년까지 달성하도록 하되, 해당 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선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로 성비 할당 의무의 예외를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내용은 부칙이라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단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안 본칙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위 부칙규정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이 부분 내용을 개정안 본문의 의무 규정에 단서로 규정하고 부칙에서는 개정 규정의 시행에 관한 특례로서 위 성비 할당 의무를 201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며 일부 문구를 정리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12항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대안)입니다.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위해 청소년 전문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청소년연예인을 관리하는 자 등이 청소년연예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내용의 공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면 청소년유해행위로 금지·처벌하고 있는데 별도로 청소년연예인에게 음란한 내용의 공연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범죄 구성요건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아닌지, 차라리 현행 청소년유해행위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어떠한지, 청소년연예인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기타 경미한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대체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장관님,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결성·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들의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지금 현장에서 중앙부처의 업무 중복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기 다문화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좀 더 가정별로 맞춤형 다문화정책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단위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지금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기초자치단체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아닙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별로 다 구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공익사업 차원에서도 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허용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위원님, 이 법은 향후 개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설립되는 다문화센터에는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있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센터가 없는 구역, 없는 지역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이 개정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현장에서 정책에 혼선을 빚거나 아니면 저희가 중앙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정책은 무료의 지원정책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이 유료화되거나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나치게 유사한, 그래서 오인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진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110항 아동·청소년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특히 여기서 이렇게 16세 미만 또 어떤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렇게 해서 좀 더 아동·청소년 성을 보호하자는 취지나 의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실무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누가 만으로 15세인지 16세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13세를 가지고도 요새 아이들이 조숙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16세일 때 더 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비례·형평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물론 이런 성폭력 나쁘지만 살인범보다도 더 나쁘게 돼서 이걸 아예 집행유예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관의 양형권 또 헌법상의 비례·형평의 원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소위에 넘겨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위원님, 혹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영선 예, 답변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지금 살인죄와 비교하는 경우에 하한이 16세 미만의 강간죄를 7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더 중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강간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은 성폭행을 하면서 상대자가 16세 미만인지, 그러니까 중학생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조차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예를 들어 중학생끼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됐었을 경우에 피치 못하게 집행유예를 해야 되거나 처벌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중학생들을 구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제기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같은 법에 의해서 그리고 소년법에 의해서도 보호처분, 그러니까 보호자에 의한 감호위탁 또 수강명령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학생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법감정은 20년 이상의 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사결과도 있듯이 저희가 어떻게 하면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경우 때문에 가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 소년법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서 가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그러면 보충으로 다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예.

○김진태 위원 여성부장관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0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이런 겁니다. 13세 미만자를 강간을 했을 때 10년 이상 징역으로 되어 있고, 그 13세 미만자를 그냥 살인했을 때는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평성의 문제를 누차에 걸쳐서 그동안에도 지적해

왔고 대표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 입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7년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하는 건 그 전제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16세는 가해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13세, 16세 이렇게 세부적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고의를 입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너무 세부적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여기 검토결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관적 구성요건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이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11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2소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그것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2소위로 해 버리면……

위원장의 편파적 사회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 한국 아동들도 발육이 빨라지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강화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원안에 찬성하려고 했는데 2소위로 보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질문하시는 줄 모르고……

○박지원 위원 장관님, 아시지요? 여성·아동을 생각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영선 김회선 위원님!

○김회선 위원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9항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하고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센터의 1345 서비스와 중복이 되고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나요, 법무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회선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보도 나온 내용에 의하면 여가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부처가 여러 부처가 있다 보니까 '법무부 행사에 지원하지 마라' 하는 공문을 보낸 걸 가지고서 언론에서 전형적인, 그야말로 요새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칸막이를 없애라 하는 그런 데 배치되는,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우선 그 사건의 경위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콜센터의 중복 문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안 그래도 존경하는 김회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언론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저도 그 담당자에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보도는 사실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취재하지 못한 잘못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보냈던 공문을 다시 가져오라고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법무부의 통합프로그램에 협조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의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은 어떤어떤 과정을 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어떤어떤 과정을 통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통합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 어느 부처의 어떤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는지를 안내하는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서를 다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은 양쪽이나, 하여튼 현장의 취재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담당 언론사에도 그런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혀 지금은 문제가……

○김회선 위원 그다음에 콜센터의 중복 문제는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예, 콜센터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하는 것은 재한 외국인을 상대로 사증·체류·출입국·국적 취득에 관한 정보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결혼이민자에 대한 콜센터와 지금 이 법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종전의 결혼이민자,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지원에 의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전반적인 생활정보, 문화정보에 관한, 그런 정착을 지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콜센터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콜센터에서 생활정보까지도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민간기업의 지원이 더 이상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이 두 콜센터를 통합해서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활정보 또 각종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관한 정보를 주는 그런 기존에 하고 있던 서비스를 그대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회선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선 예.

○김회선 위원 장관님께서 발언 시간 대부분을 그거 하셔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109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하고 112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나온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한 번쯤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2소위에 회부를 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니까 109항을 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이시지요, 112항하고요?

109항과 112항을 2소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회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방망이를……

여성부장관님이 가슴이 아픈 표정을 지으시네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이게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만큼 그렇게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주여성들이 찾는 전화라는 것은 사실 자질구레한 이런 생활정보와 정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 위한 그런 전화 서비스고 지금 저희가 민간기업의 지원이 끊어져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런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개정까지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려는 그런 취지로 좀 더 발전시킨 시스템인데요……

○박지원 위원 장관, 왜 당정협의를 충분하게 안 해 가지고 와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죄송합니다.

○박지원 위원 이거는 그냥 통과시킵시다, 그러니까.

○위원장 박영선 김회선 위원님, 112항은 2소위로 보내고요, 109항은 장관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김회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영선 예, 그러면 112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소위로 회부하고요. 109항은 그냥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장관님, 질의할 기회가 많지 않을 거 같아 가지고 짤막한, 질의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또 학교폭력, 청소년폭력, 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콜센터도 1366, 1388 또 법원에서 하는 보호처분, 검찰에서 하는 예비적 처분 또 경찰에서 하는 뭐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아마 소관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느꼈던 점이 왜 이런 것이 어떤 거는 교육부, 어떤 거는 여가부, 어떤 거는 검찰, 어떤 거는 경찰, 어떤 거는 법원, 중구난방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부처들이 각자 갖고 있는 이해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참에 저는 여성가족부의 관점에서 총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한번 이런 것을 정비하고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하고 의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제11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0항과 112항은 2소위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백재현·배기운·전순옥·우윤근·강기정·김동철·유성엽·안민석·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18시00분)

○위원장 박영선 다음에는 통일부장관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획재정부 법이었나요, 채권…… 오전에 상정되어서 처리 못 한 것 2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관한 질의가 있으셔서 사전에 논의를 다 해서 지금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채권……

오셨습니까? 기재부장관님 안 계신가요? 가셨나? 가셨나 본데 그러면 연락하셔 가지고 차관님이라도 오시라고 해서 하지요.

---

2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광진·김을동·정희수·강기윤·박인숙·이상일·조현룡·李宰榮·문정림 의원 발의)

3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박민식·김재경·안덕수·박대동·김종훈·조원진·성완종·김용태·신동우·이한성·신성범·이학재·이종훈·송광호·나성린·정의화·최경환 의원 발의)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이종걸·유승희·전병헌·김재윤·정호준·이미경·신학용·정청래·진선미·부좌현·홍의락·임수경·윤관석·조정식·최민희 의원 발의)

3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8시02분)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훈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위

원회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통합됨에 따라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보훈처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당연직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6월 20일에 이미 상정하여 논의한 바 있는 법률안입니다.

당시 안 제9조제1항이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와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에서 발생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를 제5장에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와는 다르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부당지원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도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 보증기관이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의 법률안과 제36항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선 예,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원 위원 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박지원 위원 지금도 5·18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그리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안 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아닙니다. 합니다.

○박지원 위원 하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박지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 회의에서 그러한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곳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때문에 못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가 있어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단체와 5·18의 숭고한 기념식을 마치 보훈처장이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위원님,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박지원 위원 그때 속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었는데……

○박지원 위원 ‘뜻’이 아니라 ‘말’이에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박지원 위원 국회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을 대

표하는 기관인데 이러한 것이 의결됐으면 정부에서는, 보훈처에서는 기념곡으로 지정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의원님들께서 지정 촉구 결의안을 결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정부는 기념곡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읍 위원 제가 잠시만……

○위원장 박영선 예,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김도읍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님을 위한 행진곡을 특정 세력이, 그러니까 공식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특정 세력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자신들만의 공식 노래로 부르는 단체가 있으니 그런 단체에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를 5·18까지 전체로 적용해서 하는 것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도 하지 않는 단체가 5·18 공식 노래로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가 없다면 5·18 공식행사의 기념곡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마치 자신들의 어떤 공식 노래로 불러오고 있으니 통합 차원에서 어렵다, 5·18 단체가 애국가 제창 안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들었는데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정확히 말씀드리면 '특정 단체가 자기들만의 행사를 할 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또 애국가 대신에 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정부 공식 기념식에서 전 참석자가 일어나서 제창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도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제3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내용이 일감 몰아주기입니까,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아니요, 일감몰아주기는 밖에서 얘기할 때 그런 거고요. 내용은 그런 거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권성동 위원 포함하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권성동 위원 그러면 제35항은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하도급거래 공정화…… 이거는 부당특약에 관한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권성동 위원 이거는 일감 몰아주기하고 관계없는 것인가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권성동 위원 제33항,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선 예.

○권성동 위원 이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제39항·제40항 소위 말해 FIU법이 여야 간에 정무위에서 연계해서 처리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39항·제40항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제33항에 대한……

○위원장 박영선 제34항이요, 제33항?

○권성동 위원 제33항.

○위원장 박영선 예.

○권성동 위원 제33항에 대한 표결은 조금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제33항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 제34항·제35항·제3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것은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금융실명거래……

○박지원 위원 제32항 통과됐어요?

○위원장 박영선 예,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박지원 대표님이 이거 질문하실 것 같아서 여쭤 보라고까지 했는데……

○박지원 위원 이제 막 가져왔어요.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하실 말씀을 하세요.

국가보훈처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지원 위원 다 통과돼 버렸는데……

○위원장 박영선 그래도 말씀하실 거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 보니까.

○박지원 위원 제32항, 저는 제2소위로 넘기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국가보훈위원회는 당초 국무총리 소속이었으나 2009년 직급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되었고 총리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보훈처로 이관되었음. 불과 4년 만에 다시 원위치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고 위원회가 총리 소속이었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열린 전체회의는 불과 두 차례, 개정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 및 실효성 강화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박지원 위원 그러면 이제 총리실 직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위원장에서 총리가 위원장으로 이렇게 격상됩니다.

○박지원 위원 격상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실로…… 오늘 여기서는 통과됐으니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총리실에 충분하게 이러한 내용을 함께 보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

3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정성호·우원식·김현미·김동철·김기식·홍종학·전해철·박주선·노웅래·박남춘·신경민·남인순 의원 발의)

3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3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853)

4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14분)

○위원장 박영선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1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고 PF 대출 및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 투자자에 대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하고 상품판매 시 예금자보호 여부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여 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연령기준을 주택소유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의 두 법률안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 5월 6일 회부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건에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무분별한 자료요청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및 선의의 거래자 피해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정무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6월 26일 회부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금융정보원장이 고액 현금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통보유예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게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분석심의회를 두어 특정 거래정보를 검찰총장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거래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인에게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조화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보분석심의회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위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경유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 법률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되는 이중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처벌조항과 일치시켰고 그밖에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제45항·제47항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고 의사일정 제37항·제38항·제43항·제46항·제48항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질의 순서입니다.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할게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전해철 위원 먼저 제44항입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이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전해철 위원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법안이라고도 하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정부안이 정무위에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정부안이 특별히 바뀐 부분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면요, 정부안 중에서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목적 조항에 들어갔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리고 DTI 제한이 삭제되었고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DTI 제한이 삭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전해철 위원 법안에서는…… 삭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안에는 애초에 없었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없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랬었고……

○금융위원장 신제윤 전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전해철 위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특칙이 정무위에서 추가가 됐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전해철 위원 제가 이렇게 위원장께 질의하는 이유는 이 제도를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저는 일단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정부안에 나와 있듯이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전해철 위원 그래서 정무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게……

○금융위원장 신제윤 목적 조항에 들어갔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생각은 있었는데도 정부안에서 못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은 충분히 강조되고 운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동의합니다.

○전해철 위원 동의를 했으면 목적에 애초에 추가를 했었어야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전해철 위원 하세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전자산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의 부담과 구조개선을 위해서 안전자산의 정의를 함에 있어서 DTI 규정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다른 나라의 입법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DTI 적용을 받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20%라서 DTI 규정을 강하게 집어넣을 경우에는 풀을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큰 문제가 DTI가 적용되고 있는 게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이……

○전해철 위원 결론만요. 그러니까 DTI를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위원장 신제윤 그래서 법에는 규정을 하지 않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DTI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는 대통령령에 집어넣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예.

○금융위원장 신제윤 그런데 다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도권만 DTI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에 DTI가 들어가 버리는 지방은행은 커버드 본드를 발행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DTI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행정부에 맡겨 주시면……

○전해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DTI를 넣어서 제가 말씀드린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목적이 충실하게 될 거를 이야기하고……

○금융위원장 신제윤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제도가 빨리 시행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규정하는 게 근거규정을 두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통령령에 넣어서 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도 취지하고 거의 일치되고 있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2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더라도 지금 그렇게 해서 DTI를 앞으로 넣겠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조항에 있어서 부족할 수가 있다, 대강 취지는 같지만. 그래서 이거는 제2소위에서……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선 제44항이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다시 3분 주시면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다른 법이요?

제44항 그다음에 이어서 하십시오.

○전해철 위원 제45항·제46항 위원장님께 또 이야기드리는데요.

지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2개, 이게 핵심은 연대책임을 비례책임으로 완화하는 것인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공인회계사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비례책임이 뭡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자기에게 책임된 부분……

○전해철 위원 법률적인 용어예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제가 법률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해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전해철 위원 이것도 제 생각에는 원고들에 대한 권리구제가 약화된다는 법무부의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 또 회계사님들의 과도한 책임은 제한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원고들에 많은 책임을 지우고 또 거기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아직은 부실한데 회계법인의 책임만 이와 같이 연대에서 비례로 더는 게 맞냐라는 부분이고 또 일반적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상당히 유보적인 의견을 보여서 제45항·제46항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님, 이야기 안 들으면 그만 할 겁니다.

○위원장 박영선 제가 지금 조금 바쁩니다.

○전해철 위원 제45항·제46항도 제2소위로 가서 한 번 더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제45항·제46항, 제2소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 위원장님, 잠깐만 정부 의견만 간단하게……

○위원장 박영선 정부 의견 이게요, 18대 때도 올라왔다가……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에서 다시 폐기된 법안입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45항 중에 코넥스시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서 하는 법안이라서 비례배분…… 제45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비례책임 부분은 제2소위에서 논의하는 거는 정부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앞의 부분, 그러니까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해서 일부 상장 부담을 덜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꼭 이번에 처리를……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법안을 분리해야 되는데요. 가능합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네…… 답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법안 내용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전체를 소위에 회부해서 같이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제가 설명드릴게요.

18대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의 회계책임을 그동안에 연대책임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회계사의 책임을 감해 주자는 법안인데 이게 18대 때도 법사위까지 왔다가 폐기처분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나치게 공인회계사 쪽에 치우쳐서 다른 책임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법안이 18대 때도 폐기처분됐었는데 지금 똑같은 법안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라서……

○권성동 위원 정무위에서 넘어왔는데……

○위원장 박영선 이게 정부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제2소위로 회부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영선 예.

○권성동 위원 비례책임제도를…… 공인회계사 책임과 관련되어서 현행법은 부진정연대책임 지게끔 했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무한정 그런데……

○권성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례…… 그러니까 책임에 상응하는, 잘못에 상응하는 그런 책임만 지도록 비례주의를 도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공인회계사를 위해서?

○금융위원장 신제윤 그러니까 소액……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책임의, 그러니까 이게 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 책임만큼의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모든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라서 회사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가 다 연대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저희가 정무위에서 논의한 안은 일정의 소액 부분은 연대책임을 계속 공인회계사가 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비례책임으로 가자는 게 정무위에서 논의된 안이었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면 소액 부분은 시행령에다가 규정하나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시행령에다가 규정을 할 생각입니다.

○권성동 위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들의 이런 분쟁의 책임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거를 책임지게 하는 보험에……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권성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소액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져서 소액피해자들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들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인회계사의 자기 자신의 자산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자기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이 아닌 모든 책임을 다 지우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개정안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소위로 넘기는 것보다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전해철 위원님은 2소위에 회부하자 그러고 권성동 위원님은 그냥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두 분 의견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용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회사주주들이 여기로 인한 손해를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라는 파이는 똑같은데 과연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똑같은 논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제가 추가로……

○위원장 박영선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이 조항 말고 나머지 부분을…… 법안이 분리된다면 그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급하다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전문가, 회계사 또 변호사 이런 전문직이 일정 부분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 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법무부나 은행연합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게 클리어가 된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용인이 된다면 그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저는 2소위에서 바로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소위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 2소위 가서 논의하지요.

○위원장 박영선 권성동 위원님이 2소위로 보내자고 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 어차피 반대하니까 가서 논의해 봅시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금융위원장 신제윤 위원장님, 그 문제 한번 논의를……

○위원장 박영선 제45항이지요, 지금?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위원장 박영선 제45항·제46항을 2소위에 보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융위원장 신제윤 아니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박영선 그런데 그게 법을 쪼개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의결하시기 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2소위 가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오늘 코넥스시장이 개장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거의 통과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정책이나 그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전해철 위원 방안이 있어요?

○권성동 위원 제45항이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박영선 코넥스.

○금융위원장 신제윤 코넥스시장의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들이 코넥스시장에 상장을 할 때 상임감사를 반드시 둬야 된다 이런 조항들을 유예를 해 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는 상장 부담을 줄여 주는, 중소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권성동 위원 중소기업을 위해서 좋은 법안인데 왜 그걸……

○위원장 박영선 아니,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방안은 있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박영선 어떻게요?

○전해철 위원 비례책임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삭제하고 통과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게 지금 정부안이 아니고 의원입법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김관영 의원님 안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정무위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보시든지.

○권성동 위원 일단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조금 논의를……

○전해철 위원 놔두고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제46항을 2소위에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6항은 의결합니다.

제46항은 2소위로 보내고요, 제45항은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시간이 좀 있으면 금융위원장님 상대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에 대한 철학이나 입장들을 토론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러한 권리가 현대 헌법상의 권리로 부각되고 있는 점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국가권력은 개인에 우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과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고전적인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해석에서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거든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을 우선시하고 국가주의자들은 국가를 우선 하지요.

지금 그거와 관련된 상충된 법들이 FIU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건 제41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4조제2항도 역시 과세정보를 저축기관이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박범계 위원 역시 그런 과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안건 제42항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보험회사에 대한 무면허, 음주운전 관련 자료의 제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권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FIU법과 함께 2소위에 회부를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제41항·제42항, 2소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

○이춘석 위원 제39항·제40항도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선 제39항·제40항은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8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4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위법이 지금 대충 다 정리가 되었는데요, FIU법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FIU법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FIU가 국세청이나 검찰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현금거래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았을 경우에, 2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소위 전문용어로 CTR이라고 얘기하고 의심거래는 STR이라고 얘기하는데 CTR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

해 주는 것은 금융위원장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STR의 경우에 동의를 못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FIU에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외부로 누출시키지 말라는 것은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의 임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것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관한 것은 그 범위에 속하지 않고 또 FIU의 원래의 규칙이라는 것이 자금세탁이라든가 돈세탁과 관련된 그런 부정한 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세금을 걷을 목적으로 FIU법을 손대는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FIU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했던 것이 지금 논의 결과 밝혀졌고요.

미국의 IRS, 그러니까 국세청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FIU법과 관련된 법을 보면, 미국은 불특정다수와 관련된 세금정보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밖에 개별적인 어떤 FIU에 접근하는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본인에게 다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제적인, 선진국 FIU의 운영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현재 정부가 제출한 FIU법은 지나치게 오·남용의 사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FIU를 통해서 그동안에 검찰이 오·남용을 해 왔고 또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국민사찰법, 기업사찰법으로 확대될 수 있고, 또 이 FIU법이 잘못 작용이 되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거래를 안 하고 현금을 다 장롱에 쌓아둬야 되는 이런 역풍도 생각해 봐야 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공정거래위원장님과 금융위원장님 잠깐 이석하시고요.

---

55.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8시40분)

○위원장 박영선 그다음 법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2차관님, 이석준 차관님!

○박지원 위원 몇 항 상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선 제55항입니다. 아까 오전에 국가채권 관리법 이것이 상정이 보류가 되었었는데요,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부분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신 것을 기재부에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수정의견은 이렇습니다.

원래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채권을 추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채권추심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서 제한범위를 두는 조항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민간에게 위탁하는 데 있어서 범위규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한규정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런데 2차관님은 예산 담당 차관님이시고, 지금 법사위에서 기재부의 예산과 연계된 법안들 때문에 법사위원님들이 아주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사실 법사위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화가 날 때가 많은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각별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법사위원님들의 노고도 함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러면 제55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이석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아까 제107항 영유아보육법(대안) 의결한 것이 수정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이 수정의결 하는 것

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10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유성엽·윤관석·인재근·홍종학·배기운·우원식·이인영·정성호·김제남 의원 발의)

10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장병완·노웅래·최민희·배재정·신경민·윤관석·김윤덕·강동원·이미경 의원 발의)

1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0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05.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8시44분)

○위원장 박영선 다음 미래방송위원회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와 계신가요? 착석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님,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경재 위원장님, 처음 법사위에 오시지요, 19대 들어오셔서?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진지하게 법안을 처리해 주시는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101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2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3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대안), 의사일정 제104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5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문광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광섭 전문위원입니다.

미방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101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발주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 등의 회사 중에서 미래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으로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102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 전문 채널사업자의 분담금은 방통위가 징수하고,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사업자 등의 분담금은 미래부장관이 징수하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주체를 분리하는 내용으로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103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대안)은 한미 FTA, 한·EU FTA 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104항의 방송법 개정안(대안)과 105항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대안)은 KBS와 EBS의 결산을 감사원 검사를 먼저 거친 뒤에 국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각각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1항·102항……

○박지원 위원 101항……

○위원장 박영선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예.

101항은 전문위원 검토가 좀 문제가 있다고 2소위로 한번 넘기자고 그러는데, 급한 것 아니지요?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101항 2소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걸 설명을 하자면 현행법에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데도 이들 기관이 그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를 청취할 필요가 있고 민간 중소기업의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려 했던

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소위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101항 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02항·104항·10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재 위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요. 제가 뭐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위원장 박영선 종편 있잖아요, 종편을 때때로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과연 저것이 언론으로서 그리고 방송으로서의 공영의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회의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종편의 역할이 여론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론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해서 지난번에 일부 징계처분을 내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년에 다시 재허가 여부에 여러 가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위원 저도 좀……

○위원장 박영선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이경재 위원장께 질문하는 게 같은 친구로서 좀 죄송하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편에서 말이지요, 소위 정치 해설가들이 나와 가지고 너무 희화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이 무슨 사생활 문제가 있다라는데 앵커가 아무리 '아니라고 밝혀졌지 않느냐' 하더라도 이게 가상을 해서 영화를 만들면 굉장히 히트할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받았다', '무죄 판결 났지 않느냐', '그래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고 개인에 대한 명예 실추입니다.

그런다고 그것을 고소를 하면 평론이니까, 오랫동안 언론계에 계셨으니까 아시지만 논설위원실에서 사설 쓰는 문제 같은 것은 언론 심의 규정이나 법에서도 좀 관대하지 않습니까, 평가니까?

이런 것이 과연 대중을 상대하는 방송매체로서 바람직한가, 너무 방송통신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지금까지의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디까지나 객관적 사실 외에 타인의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아주 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훈련받을 때도 그렇게 했고요.

요즘에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지나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당사자인 본인이 고소를 해도 무혐의로 자꾸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오도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언론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메커니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기대를 할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신경민 위원님!

○신경민 위원 현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KBS 옴부즈맨 프로그램 얘기는 들으셨을 거고요. 지난 주말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담당 국장·부장이 보직이 변경이 됐고 거의 해임되다시피 된 것 같던데요. 그리고 MBC에서도 2580을 아예 한 꼭다리를, 10분 이상짜리 프로그램을 들어내고 YTN도 프로그램 자체가 잠시 나가다가 꼭지 하나가 아예 다 날아가 버리고……

이 3개 사태를 보면요, 지금 입증 자료가 없다는 것 하나 빼놓고는 방송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 주고 있고, 이런 사태

는 칠팔십 년대보다도 더 악질적인 사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IO가 발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칠팔십 년대의 그 무섭던 IO들이 다시 등장을 해 가지고 보도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편집회의, 편성회의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요, 작금에 일어나는 일을 종합해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방송·우리 언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박영선 위원장, 이춘석 간사와 사회교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좀 알아보시고 무슨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기구입니다. 방송의 내용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개입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런데 현재 정확한 내용은 사실은 각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충 흘러나오는 내용으로 파악을 하면 기자들 나름대로의 기사 내용과 데스크가 판단하는 균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늘 언론사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기자 생활 할 때 또는 데스크 할 때에 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옥신각신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있어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이것은 방송사 내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민 위원 한마디만……

○위원장대리 이춘석 1분만 더 넣어 주세요.

○신경민 위원 아니, 한마디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답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를 않으시는구먼요. 그런데 사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마 위원장님 본인이 직접 겪으셨고 저도 겪었고 모든 언론인들이 겪고 있어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제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요, 정말로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서는요, 더군다나 언론과 방송을 이렇게 끌고 가서는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다 관심을 가지시는 입장에서 하여튼 공식적인 입장과 진짜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석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이것 논의는 않는 거야? 아니, 추가 논의 대상에……

○위원장대리 이춘석 그 부분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함진규·박범계·강은희·권성동·권은희·金永柱·박민식·여상규·이진복·이철우·홍일표·김관영·김성곤·서영교·원혜영·조정식·황주홍 의원 발의)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6.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7.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8시57분)

○위원장대리 이춘석 다음은 운영위원회 관련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8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외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절차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정비하고 고령 등의 사유로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경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부칙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일부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고 누락된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으며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 시 경호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주체를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의 법률안은 일부 자구만을 수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4항·제27항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다만 대학교수직의 경우에 현행 휴직 상태에서 사직 의무가 신설되는 것이므로 소급 입법화 우려가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사직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라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사직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게 소급 입법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그 내용은 운영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이춘석 그래서 앞으로 1년간의 기간을 정해서…… 사실은 다른 직은 다 사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직해라 하면 이게 소급 입법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그건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 아니고 아마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전해철 위원 제가 그 회의에 있었으니까 제가 일단 대답을 할게요.

그 의견에 제가 찬성·반대를 떠나서 일단 설명드리자면 그때 논의할 때는 교수직에 있던 분들이 19대 총선에 출마하거나 또는 의원직이 될 때는 이런 조항을 예상을 하지 못했다, 거의 퇴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와서 퇴직을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러니까 19대 시작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불의의 소급효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논의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19대에 한해서 앞으로 될 사람 예를 들어 보궐이라든지 또 20대 이런 때는 하자 이렇게 논의는 됐었지요.

○위원장대리 이춘석 제가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해서 막지는 않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소수의견으로 대학교수직의 경우에 휴직 상태에서 사직 의무가 신설되는 것은 소급 입법 우려가 있다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원칙적으로는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사실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통과 자체를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제2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제26항·제2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법안 상정과 관련한 기관장 대리출석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대리출석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고 승인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9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9시04분)

○위원장대리 이춘석 다음은 안전행정위 소관 법률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6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용 전문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운전 중 DMB 등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이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읍 위원 간단하게……

○박지원 위원 그만해, 그만.

○위원장대리 이춘석 예,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박지원 대표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무지의 소치로 여쭤 본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사무총장입니다.

○김도읍 위원 신고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포상금 지급 시기가 언제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지급 시기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지급 시기는 기소가 됐을 때나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확신을 가질 때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기소가 됐을 때, 확신을 가질 때, 그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포상금의 취지가 지금 여러 가지 범죄, 중대한 범죄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선거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취지를 살려 볼 때 최대

한 빠른 시기에 지급함으로써 이런 고발·신고 정신을 앙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예.

○김도읍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떤가, 사무총장님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그래서 안행위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하고……

○김도읍 위원 아, 안행위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수하는 제도 그런 것이 도입되게 되는 거지요.

○김도읍 위원 글쎄요, 환수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을 거 같은데…… 안행위에서 논의가 됐다 하니, 계속적으로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안행위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소위도 여러 차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현안 관련해서 하나, 이성한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안행위에서 이번 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서 대답을 했지요?

○경찰청장 이성한 예,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안행위의 많은 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법사위에서 다시 확인을 할게요.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 받아서 다 읽어 봤습니까?

○경찰청장 이성한 예, 다 읽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그 공소장을 통째로 다 하나도 현재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경찰청장 이성한 공소장을 인정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존중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피고소인들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자는……

○전해철 위원 지금 신분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피고소인이에요, 아니면 피고인이에요?

○경찰청장 이성한 피고인입니다.

○전해철 위원 피고인이잖아요?

○경찰청장 이성한 예.

○전해철 위원 무죄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수사 총책임자가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찰청장 이성한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의견을 피력……

○전해철 위원 아니, 재판이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

○경찰청장 이성한 사안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해철 위원 통상 형사재판,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면 1년 반, 2년 걸리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이성한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청장께서는 그런 대법원 재판 다 끝나봐야 그때 가서 입장을 정하겠다 이거예요?

○경찰청장 이성한 현재로서는 제가 발언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부적절한 게, 이야기한 대로 재판에서 충분히 증명되어야 될 것도 있지만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공소장 하나하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또 경찰에서 해야 될 조치는 조치대로 하고 이게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총책임자로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도 많은 인원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더군다나 검찰 가서 기소해서 수사결과 발표를 했는데 그 수사 대상자가 총체적으로 그 수사결과를 부정하는,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청장 이성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게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물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아닌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변소하는 부분이 있고 할 텐데, 그렇더라도 총체적으로 나타난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일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제가 지금 공소장 갖고 와서 하나 하나를, '이거 인정합니까?' '이거 인정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자세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말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경찰청장 이성한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경찰청장으로서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밝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해철 위원 앞으로 모든 형사 피의사건에서 그렇게 할 겁니까, 경찰이 수사한 사건도?

지금 그 공소장에서 제가 알기로도 상당 부분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때 자백을 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으면?

왜 그러시지요? 우리 청장께서 수사도 오래하고 경찰에 굉장히 오래 있으면서 합리적으로 했는데 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경찰청장 이성한 일단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전해철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판이라는 게 무죄추정을 하려고 하면 대법원까지 가봐야 아는 거고 그다음에 1심을 끝내려 해도 최소한 불구속 사건에서 칠팔 개월, 1년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고 있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게 해결이 되고 방책이 되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안행위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 이야기가 마무리돼 가는데 지금 정말로 제가 청장께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고 또 변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소로 가고 그리고 경찰이 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하는 자세를 우리 청장께서 가지셔서 까닭 없는 의혹이나 불신이 안 됐으면 합니다.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이성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경민 위원 잠깐만, 현안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석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민 위원 지금 무죄추정의 원칙에 숨으시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다른 예는 그만두고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이 몽땅 상하로 다 해 가지고 한 경우에, 수사부장부터 시작해서 사이버수사대 기획실장까지 몽땅 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일하고 있지요?

○경찰청장 이성한 예, 그렇습니다.

○신경민 위원 다 치안감, 경무관 해 가지고 진급해서 상당히 요직에 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다 일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청장 그만둘 때까지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계산하고 계시는 거지요, 시간을?

○경찰청장 이성한 글쎄요, 기간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불구속 사건이라니까 1심에 혹시, 지금 무죄 난다고 다들 떠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 무죄 나면, 2심·3심 가면 다 무죄 난다고 하면 계속 일을…… 지금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지요, 시간 계산을?

○경찰청장 이성한 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 박 경감이라는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청장 이성한 박 경감은 지금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신경민 위원 그래 가지고 어디에서 지금 대기 중입니까?

○경찰청장 이성한 서울청에서 직위해제 되어서……

○신경민 위원 서울청에서 대기 중입니까?

○경찰청장 이성한 예.

○신경민 위원 그분 하나만 왜 그렇게 직위해제 하셨습니까? 그분도 이번에 보니까 기소유예된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 이성한 현재 일단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니까 기소된 사람은 일단 직

위해제하고 기소유예된 사람은 전부 다 현직에서 일을 하게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건가요?

○경찰청장 이성한 기소유예는 아니고 지금 두 사람이 기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사부장이니 이런 분들은 아무 문제없다는 거지요?

○경찰청장 이성한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나온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분들은 지금 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경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구먼요?

그러면 박 경감 하나만, 지금 관련자들 리스트 죽 나온 중에서는 박 경감 하나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또 있습니까?

○경찰청장 이성한 박 경감은 공식적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분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면 두고 보셔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경찰청장 이성한 그래도 일단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경민 위원 아주 굉장히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고 자평하시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경찰청장 이성한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제는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하실 거지요? 모든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은 약간의 불이익이 있지만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 문제없고 경찰 개혁도 하실 필요 없고, 그러면 그 기소된 박 경감은 동기가 뭡니까? 왜 디가우징(degaussing), 안티 포렌식(anti-forensic 기법을 써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감찰하셨습니까?

○경찰청장 이성한 검찰 수사에 의하면 증거인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감찰은 안 하셨고요, 내부 감찰은 안 하신 거고요?

○경찰청장 이성한 내부 감찰은, 강제수단을 동원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임의조사 밖에 못 하는 감찰보다는 훨씬 고강도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현재로서 더 이상 감찰 계획은 없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래요? 그리고 권은희 과장은 감찰했습니까?

○경찰청장 이성한 권은희 과장이 언론에 밝힌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다가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어서 중지하고 검찰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송부한 바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러면 감찰이 중단됐다고 봐야 되겠구먼요?

○경찰청장 이성한 현재로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경민 위원 더 이상 감찰 계획은 없습니까?

○경찰청장 이성한 그거는 상황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신경민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굉장히 형사법의 원칙이니 이런 원칙에 충실한 거로 지금 돼 있는데 전해철 위원이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들은 잘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 개혁 계획이니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아예 찾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훌륭한 리더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국정조사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단 여러 가지를 묻겠습니다마는 제발 그런 답을 갖고 오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제95항·제9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9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심재권·원혜영·추미애·김성곤·박주선·홍익표·임수경·조명철·한정애·유승희·이인영·이목희·문병호·전순옥·윤관석·박혜자·김민기·최동익·김광진·서영교·배기운·이학영·전정희·노영민·최규성·부좌현·유은혜·유기홍·유대운·우원식·김경협·김미희·오병윤·우윤근 의원 발의)

9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성곤·정청래·이학영·문병호·배기운·전순옥·윤관석·윤후덕·부좌현·박주선 의원 발의)

9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박병석·인재근·김성곤·배기운·이석현·홍익표·유성엽·안민석·박혜자 의원 발의)

10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9시18분)

○위원장대리 이춘석 다음은 외교통일위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7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8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9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 중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만 직접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의견청취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규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르면 되므로 그 안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외교부 차관!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예.

○박지원 위원 지금 장관께서 ARF에 가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남북 외교부장관 접촉 계획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계획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없어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예.

○박지원 위원 그러면 조우도 안 되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그거는 현장상황에 따른 거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번에 차관께서 대통령 방중하시는데 물론 장관이 수행하시고 차관은 안 가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거기에 윤창중 사건이 재현되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했다고 들었는데 철저히 준비를 하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예, 저희 수행원들의 행동준칙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도 몇 가지 매끄럽지 못한 것 있는 거 잘 아세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저희는 보고 받은 거는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보고 받은 게 없어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예.

○박지원 위원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말 통역은 중국 측에서 결정하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도 TV로 생중계되는 것을 보고 그 통역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 혹시 외교부에서 그런 것 모니터링 하셨어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예, 현지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모니터링을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박지원 위원 아니, 한국에서도 하실 거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예.

○박지원 위원 통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상대방 통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박지원 위원 글쎄, 외교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더냐 이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위원 이것도 좀……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실무선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말이지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자회견 때 하드커버의 기자회견문을 가지고 나오셔서 낭독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보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예.

○박지원 위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하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저희도 대통령께서 텍스트는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윤병세 장관이 접어진 A4용지 급히 전달하더라고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교부에서!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상대방 정상은 예의를 갖춰서 커버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접어진 것 장관이 전달하면 외교부가 되는 거예요? 외교부의 생명이 프로토콜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예.

○박지원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물론 외교부 내용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상들의 만찬사진은 본래 공개하지 않고 언론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나 상대국과 합의하에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통상 사진 같은 거는 그렇게 합의하고 그러는 거는 외교적으로 관례는 별로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말이지요, 청와대 대변인이 정상회담 브리핑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복의상에 대해서 상당히 브리핑을 한 다음에 한복사진 보도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하고 만찬 같은 것도 보도하지 말아 달라 했는데 그게 전부 공개가 됐어요. 일부 신문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는데 평생을 외교부에서 의전 등 여러 업무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없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차관, 인정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예, 그런 점을 잘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매끄럽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됐어요.

……

○위원장대리 이춘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 그러면 제가 평통에……

○위원장대리 이춘석 김진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평통사무처장 박찬봉 처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예.

○김진태 위원 지금 정치적 중립 규정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평통법에 의원들, 지방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평통법 제10조에, 그것도 아주 제1호에 지방의원이 대표적인 위촉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예.

○김진태 위원 이 얘기는 지금 정치인인 지방의원들이 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리고 제3호에 보니까 정당대표,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이런 것도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예.

○김진태 위원 이렇게 자문기구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다른 입법례를 혹시 봤습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우리나라 법제 중에 자문기구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예, 그

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우려가 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런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서 자문위원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통평의 기능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는데 그런 의견수렴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지금 답변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우려가 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기는…… 지금 평통 사무처 직원이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적용이 되고 다만 자문위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자문위원까지도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처럼 요구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자문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저는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결국 이거는 소위에서 더 논의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석 제99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평통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예.

○박지원 위원 평통사무처장은 장관급입니까, 차관급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차관급입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김진태 위원께서도 평통의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 야당들도 추천하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예.

○박지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평통위원 선임하는 데, 협의회장 결정하는 데 정치적으로 사무처에 압력을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제가 전화한 것 알고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예, 말씀 듣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예.

○박지원 위원 그러면 결국 평통에 대해서 야당에서 자꾸 문제 삼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대구 출신이 목포에 오셔서 가장 성공한 기업을 경영하시고 가장 존경을 받습니다. 이분이 평통 목포협의회 회장을 하다가 전남부의장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잔여임기로 전남부의장이 되셨어요. 이것을 우리 전남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동서화합 차원에서도,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도. 그런데 불과 1년여 있다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 부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전원 교체를 기본원칙으로 삼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어떻게 됐든 그거는 좀…… 제가 그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처장의 지나친 변명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평통사무처장한테 전화해서 누구 시켜 달라, 뭐 해 달라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절대 조심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유념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유념하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찬봉 예.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제98항·제10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

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19시32분)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4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금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책임 부분은 삭제하고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의결한 안에 대해서 정무위원장 그리고 양당 간사 그리고 그 법을 제안하신 김관영 의원과 연락을 취해서 모든 분이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넥스시장의 활성화,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만 빼고, 비례책임 부분만 빼고 제45항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석 수석전문위원님, 정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석 그러면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구두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석 의사일정 제4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3건의 법률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3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20시39분)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추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한 결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이춘석 위원 위원장님,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무도 없는데요?

○위원장 박영선 그러네요.

두 분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금융위원장님, FIU법은 지금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는데요, 정무위원님들이 또 강기정 의원님이 심의회에 검사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 좀 더 논의가 필요해서요.

내일 그게 합의가 되면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를 다시 열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위원장 박영선 그리고 다 지나간 이야기이기

는 합니다마는,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을 은행장으로 추천을 하셔서 임명하셨습니다만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꼭 반발이 있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모피아, 마피아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오늘 다 한 겁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님 오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일명 ICT법안, 이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긴급한 사유를 감안해서 국회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이우현·김기현·이상일·이재영·김을동·권은희·김태원·김한표·남경필·한선교·문대성·김희정 의원 발의)

(20시40분)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113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생략하고, 문광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광섭 전문위원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규제 합리화,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영선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법안 21조, 22조에 보면 21조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를 보면 '정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지요? 그러니까 부처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부면 미래부라든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여러 부처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미래부, 문화부 이렇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정부'라고 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정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노력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분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데 문화부도 같이……

○전해철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해야지, 정부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부처 간에 그런 갈등이 다 해소되지 않았던 것 아니에요? 정리가 잘 안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부처 간에 이견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문화부 다음에 기재부, 안행부, 산업부 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이 났습니다. 해결이 났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은 정부부처 2개 이상이 할 때는 '정부'라고 표기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실제로 지금 미래부가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전해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법안에 따라서 신설되는 기관이 뭐뭐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정보기술진흥원 하나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소프트웨어종합학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런 것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그런 것은 다 부설로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 게 지금까지 있었던 기관하고 다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새로운 기관인데 신설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업무들을 그 안에, 기존 있던 기관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새로운 업무들은 필요한데 그 업무들을 새로운 기관으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기관 내부에 넣어 가지고 수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관으로 하지 뭐 하려고 소프트웨어종합학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무슨 기술서비스개발촉진 담당하는 법인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이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굉장히 덜 정비된 것 아니냐 그리고 부처 간에 덜 협의가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걸 소위로 보내야 될지를 유보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아니, 전해철 위원님은 이 법이 정치하지 않다는 질문을 하시면서 소위로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해철 위원님 질문을 듣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 있겠는데요, 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부처 간에 이견들은 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전해철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전해철 위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장관님? 뭐라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부처 간에 이견들은 실제 다 조정이 돼서 법안에 녹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새로 신설된 기관 부분은 원래 지난 정부에서 정보통신부가 없어져서 ICT부서가 없어졌을 때 흩어져 있던 기능들을 정보통신기술진흥원에 다 모았습니다. 모았고 그다음에 실제 정보기술진흥원의 인력들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인력들을 모았기 때문에 실제로 인력이나 예산, 이런 추가적인 부분들이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다.

○전해철 위원 장관께서는 여전히 정부 각 부처라든지 또는 지금 이 법안을 만든 거나 이런 것을 총괄·통괄해서 다 아시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지금 장관님 답변을 들으면요,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법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법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게 안 되면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잘 챙겨 보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의사일정 제11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7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성동	김도읍	김진태	김학용
김회선	노철래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신경민
이주영	이춘석	전해철	정갑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전문위원	이상용
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문광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박찬봉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현오석
제2차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교육부장관	서남수

통일부장관	류길재
법무부장관	황교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경찰청장	이성한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산림청장	신원섭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금융위원장	신제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문상부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장	차한성